관리 번호 사회재난-9

「원전안전분야(방사능누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2019. 7.

Blue 관심

Yellow 주의

Orange 경계

Red 심각

- 이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의5, 「국가위기 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88호)」, 및 「원전안전분야 위 기관리 표준매뉴얼」에 근거하여 원전안전분야(방사능누출) 위기 상황 발생 시 기상청이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기관과의 협의 하에 작성되었음.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대응 이외의 재난관리 단계별 임무·역할 등 일반적인 사항은 표준매뉴얼을 참조하여 활용함
- 이 매뉴얼은 국가 재난관리 및 위기대응 체계 내에서 위기 경보 발령시의 조치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기상청의 예·특보 생산 및 정보전파 등 기상업무는 기상법, 예보업무규정 및 방재기상운영규정 등에 의거 시행하고,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방재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매뉴얼을 적극 참고한다.

매뉴얼 적용 기본원칙

- 이 매뉴얼과 관련된 모든 업무담당자는 이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응해야 함
- 다만, 재난상황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 재난 유형 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것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되 적극 적으로 대응 함
- 가급적 재난이 발생하면 심각단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경계, 주의 등으로 적절히 경보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절 함

【제·개정 이력】

일 자 (승인)	주요 개정 내용	개정사유	담당자	협의기관
'15. 8월	「원전안전분야(방사능누출)」위기대 응 실무매뉴얼 제정	신규제정	예보 정책과	주관기관, 소속기관
'15. 12월	방사능방재기관 비상연락망 수정	원안위 요청사 항 반영	예보 정책과	주관기관
'16. 5.	원안위 표준매뉴얼 개정사항 및 위 기대응실무매뉴얼 작성표준안 반영 (기관대응수칙 추가, 목차 변경 등)	원안위 표준매 뉴얼 개정, 위기 대응실무매뉴얼 작성표준안	예보 정책과	주관기관, 소속기관
' 17. 9.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조직 변경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정부조직법 개정	예보 정책과	주관기관, 소속기관
'18. 3.	○ 표준매뉴얼 변경 반영 ○ 정부조직법 개정 반영 ○ 비상연락망 수정	표준매뉴얼 개정	예보 정책과	주관기관, 소속기관
' 19. 7.	○ 표준매뉴얼 변경 반영 ○ 재난관리 체계 및 제도 개선 반영 ○ 위기징후 감시 등	표준매뉴얼 개정	예보 정책과	주관기관, 소속기관

- 목 차 -

l. 일반 사항	
1. 목 적	• 2
2. 적용 범위	• 2
3. 관련 법규	
4. 용어 정의	
1. 0 0	Č
Ⅱ. 위기 형태와 관리 체계	
1. 위기 형태	. 9
2. 전개 양상	. 9
3. 위기관리 체계	10
가. 종합체계도	
나.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와 역할	
다. 우리 기관의 대응체계	
라. 협업기능별 활동내용	
어. 합법/10 분 분 0 위 0	10
Ⅲ. 위기관리 기본방향	
1. 목 표	22
2. 방 침	
2. o 면	
4. 위기정후 감시	
5. 위기평가	
6. 위기경보와 경보발령	
가. 위기경보 수준	
나. 위기경보 절차	
7. 비상근무체계	28
가. 구성원별 임무	28
나. 비상단계별 근무편성 기준	28

IV.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1. 백색비상(White)	32
가. 상황	32
나. 조치사항	33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34
라. 대응체계도	35
마. 유관기관 임무와 역할	36
2. 청색비상(Blue)	37
가. 상황	37
나. 조치사항	38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39
라. 대응체계도	40
마. 유관기관 임무와 역할	41
3. 적색비상(Red) ····································	43
가. 상황	43
나. 조치사항	44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45
라. 대응체계도	46
마. 유관기관 임무와 역할	47
V. 재난상황별 조치내용 및 절차	
1. 발생상황 [54
가. 상 황	54
나. 조치사항	55
다. 부서별 임무 및 역할	56
라. 경보단계별 부서별 조치사항	57

VI.	기관대응수칙	
1.	재난관리 체계도 및 절차도	61
2.	우리기관 인접국가방사능 누출사고 대응 프로세스	62
3.	우리기관 부서별 협업기능	63
4.	관계기관 주요 임무	64
5.	비상연락망	67
VII.	부록	
1.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72
2.	국가위기관리 영상회의 시스템	85
3.	방사선비상시 국민 행동요령	87



l. 일반 사항

I. 일반 사항

1. 목적

이 매뉴얼은 원자력시설 사고에 의한 방사능누출로 국가 기능이 지역적·부분적으로 마비되는 사태에 대해 기상청과 소속기관의 임무 와 역할, 세부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규정하며, 매뉴얼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위 규정에 따름

2. 적용범위

- 가. 대상 : 원자력발전소 및 연구용원자로 시설의 방사능 누출사 고와 관련되는 모든 정부부처·기관의 활동에 적용
- 나. 상황 : 원자력발전소 및 연구용원자로 시설에서 방사능 누출 또는 방사능 오염사고로 발생하는 재난상황에 적용

3. 관련법규

- 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다. 민방위기본법
- 라. 기상법
- 마.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88호)
- 바. 「원전안전분야」위기관리 표준매뉴얼(원자력안전위원회)
- 사. 예보업무규정(기상청 훈령)
- 아. 방재기상운영규정(기상청 훈령)

4. 용어 정의

Ξ	구 분	내용		
マ	·가위기	국가 주권, 영토와 국민의 생명·재산 등 국가의 핵심요소와 가치에		
<u> </u>	7[4]/]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		
위	기관리	국가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대비하고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원을 기획·조직·집행·조정·통제하는 제반 활동과정		
	난관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		
주관기관 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유	관기관	해당 재난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 활동에 있어 주관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대규모 피해 발생 우려로 일상적 대응보다 훨씬 강화된 조치나 특		
		변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상황		
刵	상상황			
		비상상황은 진행양상과 대처내용에 따라 결과수습형, 완만진행형,		
	결과	순간증폭형으로 구분		
	- ' 수습형	상황 발생 자체가 이미 대규모 피해로 나타난 유형		
	완만	상황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심각성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유형		
	진행형	발생 초기에는 저강도 비상상황으로 보여지나, 진행과정에서 심각한		
	순간	상황으로 급변하면서 대응력의 한계가 노정되고 실패시 중대재난으		
	ठ ्सलं	로 귀결되는 유형		
		① 관심(Blue) : 위기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		
		동수준이 낮아서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 상태를 말		
		한다. 관심 경보 단계에서는 징후 감시활동을 하고, 비상연락망		
		등 관련기관 간 협조체계를 점검한다.		
		② 주의(Yellow) : 위기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국가위기로		
위	기경보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 수		주의 경보 단계에서는 관련 정보수집 및 정보 공유 활동을 강화		
	Ľ	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가동한다.		
		③ 경계(Orange) : 위기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를 말한다. 경계 경보 단계에서 주관기관은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관련기관과 함께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을		
		조지계역을 점점이고 한한기한과 함께 한격 출격 자전의 중단을 준비한다.		

구 분	내 용
	④ 심각(Red) : 위기징후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국가위기의 발생
	이 확실시되는 상태를 말한다. 심각 경보 단계에서 주관기관은
	관련기관과 함께 관련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여 위기발생에 즉각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한다.
	① 예방 : 위기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② 대비 : 위기 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 준비, 교육, 훈련함으로써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위기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위기관리	나가는 일련의 활동
활동	③ 대응 : 위기발생 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
20	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위기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
	④ 복구 : 위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
	정당한 권한 없이 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 또는 그
사보타주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거나 방해
	를 시도하는 행위를 통해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
	하여 사람의 건강·안전·재산·환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위 불안정한 원소의 원자핵이 스스로 붕괴하면서 방사선을 방출
방사능	하려는 성질이나 능력으로서, 표준단위는 Bq(베크렐)을 사용.
	1Bq는 1초에 하나의 핵이 변환 또는 붕괴되는 양
	1 Ci(큐리) = 3.7 ¹⁰ Bq
방사선	물질 내에서 원자를 전리시키는 능력이 있는 입자선(알파입자,
	베타입자 등) 또는 전자파(감마선, 엑스선 등)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
방사성	(原子核分裂生成物) 등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
물질	※ 핵연료물질 : 우라늄·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
	※ 방사성동위원소 :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구 분	내 용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대피ㆍ
방사선비상	소개 등과 같은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
계획구역	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예방적보호조치구역(PAZ) 및 긴급보호조치
(EPZ)	계획구역(UPZ)으로 구분
	※ EPZ : Emergency Planning Zone
예방적보호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하는 등 예방적으
조치구역	로 주민보호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
(PAZ)	※ PAZ : Precautionary Action Zone
긴급보호조치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계획구역	기반으로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조치를 위해 정하는 구역
(UPZ)	* UPZ: Urgent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

II. 위기 형태와 관리 체계

Ⅱ. 위기 형태와 관리 체계

1. 위기 형태

가. 사고 원인

- (1) 자연재난, 인적오류 등으로 인한 방사능 누출
- (2) 중요 핵심부품의 결함에 의한 방사능 누출

나. 사고 유형

원전 방사능 누출로 인해 주변지역 가축·식수 오염, 인근 지역주민 방사선 피폭 등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2. 전개 양상

- 자연재난, 인전오류 등으로 인한 방사능 누출
- ⊙ 중요 핵심부품의 결함에 의한 방사능 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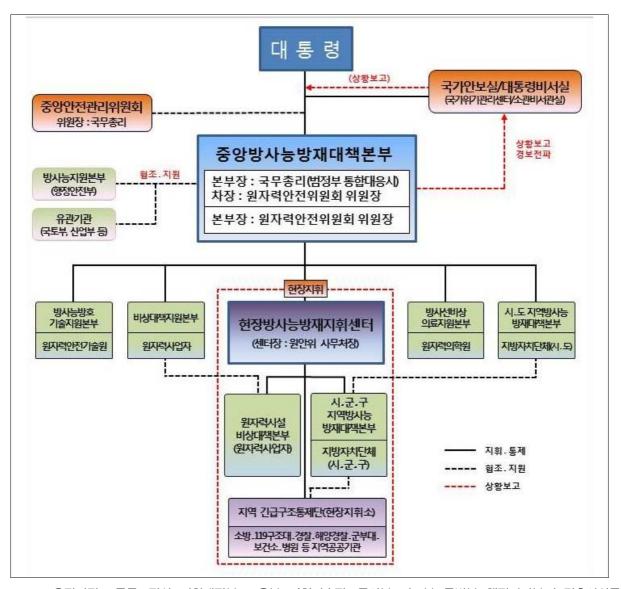
● 원자력시설 외부로의 방사능 누출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



- 발전소 종사자 및 인근지역 주민 방사선 피폭
- 인근지역 농·수산물, 가축 및 취수원 오염
- ♥ 방사성물질의 침적으로 인한 피해확산

3. 위기관리 체계

가. 종합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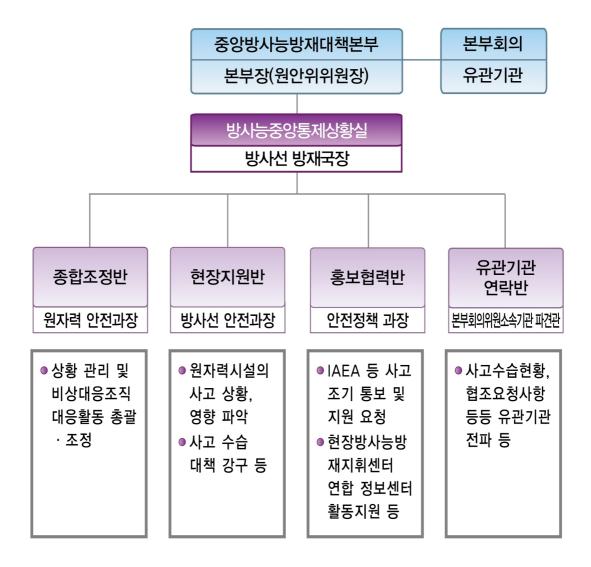
※ 유관기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나.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와 역할

구 분	임무와 역할	비고	
국가안보실	o 위기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국가위기관리센터)	o 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초기·후속 대응반 운영		
(국가파기관니앤디)	o 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		
대통령비서실	o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소관비서관실)	o 후속대응 및 복구		
	o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이행		
	o 방사능 재난의 평가 및 발생의 선포		
	o 재난수습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총괄		
중앙방사능 방재대책본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본부회의 본부정(원안위위원장) 유관기관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 중합조정반 현장지원반 홍보협력반 유관기관 연락반		
	* 본부회의 참석 유관기관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 유관기관 연락반 : 본부회의 위원 소속기관 파견관 등		
	o 방사능재난 현장대응활동 총괄 지휘 o 주민보호 의사결정을 위한 합동방재대책협의회 주관 o 사·군구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지휘 및 방재요원 임무 부여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합동방재대책협의회 연합정보센터 영합정보센터 공합조정반 사고분석반 방사선평가반 주민보호반 의료지원반 운영지원반 합동방사선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파견 부처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인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기족부, 국 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원지력안전위원회		

구 분	임무와 역할	비고
지역방사능 방재대책본부 (시·도 및 시·군·구)	o 지역방사능방재계획, 원전안전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등의 이행 o 지방행정기관과의 행정조치 및 업무 협조 o 긴급구조활동 지휘 및 통제 o 주민보호조치 이행	
원자력사업자 비상대책본부	 이 비상대응시설 가동 및 비상대책본부 발족·운영 이 사고·복구 현황 보고 이 사고확대 방지, 원인조사, 피해복구 및 제염활동 이 사고영향평가, 주민예상피폭선량평가, 주민보호조치 권고 등 비상대응활동 수행 	
방사능 방호기술지원본부 (한국원지력안전기술원)	o 사고해석 및 평가·예측 o 방사선측정, 방사선영향 평가 o 주민예상피폭선량 평가 o 방사선방호 관련 기술자문단 운영	
방사선 비상의료지원본부 (한국원자력의학원)	o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 운영 o 방사선피폭 환자 제염·치료 o 심리안정화를 위한 전담팀 운영 지원	
중앙안전관리 위원회 (국무조정실)	o 안전관리 중요정책 심의 및 총괄·조정 o 국가 안전관리기본계획안 심의 o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 조정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설치·운영



※ 유관기관(연락반):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괴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인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 업통상자원부, 보건복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인전처, 경찰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한국원자력인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원자력연구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파견 부처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기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 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원자력안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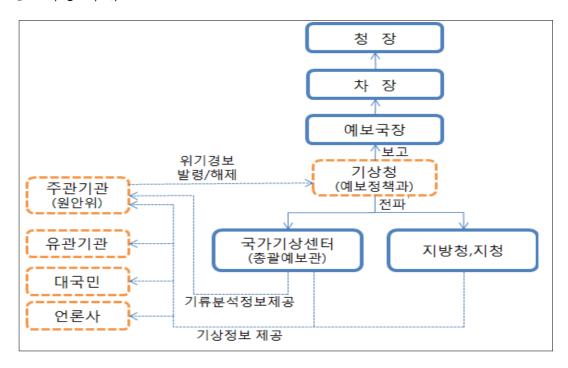
	구		주 요 역 할
본부회의		부히이	o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긴급 조치사항,
	<u></u> 근구외긔		주민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사항 등 의결
			o 중앙본부장,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에 상황 종합 보고
		종합	o 상황정보 종합관리
		조정반	o 본부회의 운영
중앙			o 실무반 역할 조정 및 운영
방사능		현장	o 원자력시설 사고 상황, 사고예측 결과 종합
방재	방사능	지원반	o 현장지휘센터 대응활동 및 지원필요사항 종합 검토
대책	중앙		o 사고 수습대책 강구
본부	통제	홍보	o 연합정보센터 운영지원
	상황실	협력반	o 재난온라인방송, 재난 문자전송 요청
			o IAEA 및 주변국에 사고 정보 제공 및 지원 요청
		유관기관	o 본부회의 안건 실무 검토 조정 o 본부회의 의결사항 및 협조요청사항 소속 부처
		유관기관 연락반	O 논두외의 의월사영 및 법조요성사영 조목 두저 전파 및 이행 종합
			o 해당 유관기관 상황정보 공유 및 업무 연락
		합동방재	o 방사능재난 등의 수습과 주민보호대책에 대한 현장
		대책협의회	방사능방재지휘센터장 자문
		연합정보센터	o 보도자료 제공, 기자회견, 언론대응 총괄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업무 종합 및 대외기관 창구
		종합조정반	o 합동방재대책협의회 운영 및 실무반간 업무조정
			ο 원자력시설 사고 상황 수집 및 분석
		사고분석반	o 방사선원항 평가 및 예측
현	장	방사선	o 현장 방사선영향평가 및 긴급 방호활동
방시	나능	평가반	o 합동방사선감시센터 현장 활동 총괄·지휘
방	재	주민보호반	o 주민보호조치와 관련한 현황파악, 종합 및 자료관리
지휘	센터	의료지원반	o 비상의료 대응 관리 및 지원활동 총괄·지휘
		_,,	o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운영 및 총괄
		운영지원반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시설·장비 운영·관리 등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출입인원·장비의 통제
		합동방사선	o 현장 방사선감시 및 평가·분석 o 지역, 기자재, 장비 및 차량에 대한 오염 관리
		감시센터 합동방사선	ㅇ 시국, 기자제, ㅎ비 봊 사항에 대인 오염 편디
		비상진료센터	o 현장방사선비상진료 총괄 조정
	시·도		
지 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o 주민보호조치 이행
시·군·구 지역방사능방재			TOLK = TRI 017
대책본부			o 주민보호조치 이행
방사능방호		방호	. 시크 소스에 피스팅 기스저 비형 TIO
기술지원본부		본부	o 사고 수습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지원
방사선비상		비상	o 방사선 상해자에 대한 의료조치 지원
의료지원본부			ㅇㅇ셔븐 ㅇ에지에 대한 귀표포지 지만
원자력사업자			o 사고 확산방지 및 수습
	<mark>비상대책</mark>	본부	V /12 700/1 X 10

다. 우리 기관의 대응체계

범정부차원의 비상대응활동이 요구되는 경우 「방재기상운영 규정」에 따른 방재비상근무를 실시하며 특별대응반(방재기상운 영규정 제5조)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1) 중수본 가동 전 대응체계

○ 대응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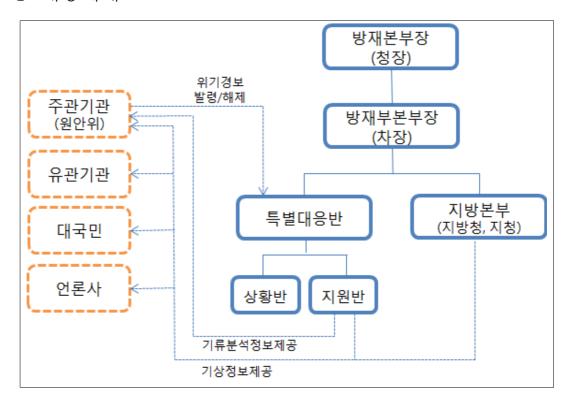


○ 부서별 임무

구 분	임 무		
예보정책과	ㅇ 위기경보 보고 및 전파		
에포성속파	ㅇ 주관기관(원안위)과 업무협력		
	ㅇ 사고지역 기상실황 감시 강화		
	ㅇ 재난관련 기관에 기상실황 등 기상정보 제공		
총괄예보관	- 방재기상정보시스템(afso.kma.go.kr)을 이용한 실시간		
	기상정보 제공		
	ㅇ 기상에 관한 기류분석 자료 제공(요청 시)		
	ㅇ 사고지역 기상실황 감시 강화		
기상청·지청	ㅇ 지자체 및 현장지휘센터 등에 관한 기상지원 점검		
	ㅇ 공항 및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기상정보 제공 점검		

(2) 중수본 가동시 대응체계

○ 대응체계도



○ 부서별 임무

구 분		임 무		
특별 대응반	상황반	ㅇ 위기경보 보고 및 전파 ㅇ 주관기관(원안위)과 업무협력		
	지원반	 사고지역 기상실황 등 기상정보 제공 방재기상정보시스템(afso.kma.go.kr)을 이용한 실시간 기상정보 제공 기상에 관한 기류분석 자료 제공 		
지방본부 (지방청,지청)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현장요원 파견(요청 시)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대한 기상정보 제공공항 및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기상정보 제공		

(3) 대응단계별 기관장 임무와 역할

- 개요
 - 기상상황 파악 및 지상지원 현황 점검
 - 방사선 위기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지시
 - 특별대응반 설치 지시
 - 관련회의 참석 : 중앙방사능방재본부회의(청장)
- 평시 및 중수본 운영 전 단계
 - 기상상황 파악 및 기상지원 대비태세 점검
 - 기상에 관한 기류분석 자료 제공체계 점검
- 중수본 운영 및 범정부적 총력단계
 - 기상상황 파악 및 기상지원 상황 점검
 - 방사선 위기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점검
 - ・방재기상 점검(대책) 회의(영상회의)
 - 특별대응반 설치 지시
 - •상세기상자료 제공
 - •필요 시 재난지역에 기상전문가 파견
 - 관련 회의 참석
 - 중앙방사능방재본부회의(청장)

라. 협업기능별 활동내용

구 분	활 동 내 용	해당부서		
①재 난 상황 관리	《상황관리 총괄 및 대응활동 등》 ○ 재난상황관리를 위한 기상정보 지원 ● 사고지역 기상상황 감시 및 분석 ● 사고지역에 관한 상세기상정보 제공 ● 기상예보 및 특보 발표 ● 방재기상정보시스템(afso.kma.go.kr)을 이용한 실시간 기상정보 제공 ○ 방재기상 업무 수행 ● 중대본/중수본 전달(지시) 전파 - 위기경보 단계 등 ● 재난사고 전개에 따라 특별대응반 설치운영 - 기상에 관한 기류정보 제공 - 현장방사능지휘센터 등에 현장요원 파견 (요청시)	예보정책과, 총괄예보관 지방청/지청		
	〈언론·대국민 홍보 등 재난공보체계 운영〉			
③재 난 수 습 홍보	재난수습홍보를 위한 기상정보 지원기상에 관한 언론대응 및 브리핑오보 및 유언비어 모니터링 및 대응	대변인실		

Ⅲ. 위기관리 기본방향

Ⅲ. 위기관리 기본방향

1. 목 표

- 가. 국가 방사능 재난피해 경감을 위한 예방 및 대비 태세 구축
- 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원체계 가동을 통한 피해 최소화

2. 방침

- 가. 국가방사능 재난대응을 필요한 기상자료 제공
- 나. 주관기관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재난피해 최소화
- 다. 신속한 보고 및 전파체계 구축

3.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요소

- 가. 대응개념
 - 목표 : 국가방사능재난 위기대응을 위한 기상자료 제공
 - 대응방향
 - 주관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상황판단 지원을 위한 기 상실황 및 분석정보 제공
 - 주관기관 및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한 재난대 응 체계 강화에 기여

나. 대응지침

- 기상실황 감시 및 분석자료 생산과 제공
 - 기상에 관한 기류분석자료 제공
 - 재난대응 지원을 위한 기상실황 및 예보자료 제공
- 주관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본부회의 참석, 실무반 인원 파견)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사고지역 기상관서)

다. 판단/고려 요소

- 주관기관의 위기경보 수준 : 백색, 청색, 적색
- 기상에 관한 기류분석 작성에 필요한 사고지역 기상상황

4. 위기징후 감시

가. 위기징후 목록

위기 형태 (4개)	위기징후 (5개)	감시수단 (9개)	감시방법	조치 (대비 • 대응)	
1. 원자력 시설 사고·고장	1.1 원전 불시정지 ※ 각종 수	한 수 원 원 전 종 합 상 황 실 (24시 간 근 무)	원전 운전변수 감시 조기경보 프로그램을 통한 발전소 건전성 확인	불시정지 대비 대응 태세 가동	
	동 및 자 동정지 포 함	KINS AtomCARE 시 스 템	원전 운전변수 감시	사고·고장 및 특이징후 발생 시, 초기 상황파악 및 보고(지역사무소)	
	1.2 각종 검사·점검 과정에서 특이 징후 발견	일 상 검 사 , 특 별 검 사	검사과정에서 발행된 지적사항표 등	필요시 사건조사 및 대응조치 (본부·지역사무소 등)	
2. 지진	2.1 지진 진동 감지	지진감시기 계측값 (기상청, 원전, KINS)	지진감시기 모니터링 기상청 지진정보 발표	감시 강화, 지진영향 분석, 상황대응반 운영	
3. 태 풍	3.1 태풍 등에 의한 특이징후 발생	기 상 청 예 보 원 전 기 상 감 시	기상예보 모니터링 원전 기상상황 감시	재난 감시 강화, 사전 대비태세 점검, 상황 대응반 운영 특이징후 발생 시,	
4. 화재	4.1 방사선관리구역 내 화재발생	화 재 감 시 기 운 전 원 외 부 소 방 서	화재감시기 모니터링 운전원 현장순시	조기 상황파악 및 보고(지역사무소) 필요시 사건조사 및 대응조치 (본부·지역사무소 등)	

* 위기경보 : 피해규모 및 심각성에 따라 관심~심각

** 관리부서 : 원자력안전과, (방사선비상 발령 시) 방재환경과

나. 위기징후 감시체계와 운용



- 기상예보, 방재기상정보시스템 등 모니터링 및 위기징후 포착 시 관계기관 신속 전파, 공유
- 감시결과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공유·전파
- 홈페이지,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을 통한 위기징후 감시·평가결 과 대국민 홍보

5. 위기 평가

- 가. 근거 : 「방재기상운영규정」 제3조3에 의거 방재기상본부장이 방재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 ※ 단, 중대 재난 발생 및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경우 위기평가를 위한 대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 나. 구성 : 예보국장(주관), 예보정책과장, 총괄예보관, 관련 부서장
 - ※ 긴급한 경우 참석자 중 직제순에 따라 최고 선임자가 회의를 주재
 - ※ 야간, 공휴일 등 신속히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 관부서 담당과장 또는 상황담당관 등이 유·무선 또는 문자·SNS 등으로 로 간략히 협의 가능, 이 경우 회의 결관는 문자·SNS를 통해 전 참석 대상자에게 전파·공유
- 다. 역할 : 수집된 기상상황정보를 종합하여 위기수준을 평가하고, 위기경보 발령, 변경 및 해제
- 라. 운영: 기상 및 재난상황에 따라 우선보고를 통해 재난상황 공유 대면회의(회의실 또는 국가기상센터)를 통해 위기수준을 평가하나 시간이 급박할 경우에는 유선, 영상회의 등의 방법을 통해 실시

6. 위기경보와 경보 발령

가. 위기경보 수준

구 분	방사선 비상단계	판단기준	비고
관심 (Blue)	-	o 기기 고장, 종사자의 실수, 절차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운전요건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상태	
주의 (Yellow)	-	o 방사선비상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는 계통의 경보 발생	협조체계 가동 및 대비계획 점검
경계 (Orange)	백색 비상	o 사고를 일으키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은 나타나지 않지만 안전 계통에 심각한 기능 상실	대응태세 점검 및 대응체계 가동
심각 (Red)	청색비상 적색비상	o 사고를 일으키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는 안전계통에 심각한 기능 상실	즉 각 대 응 조치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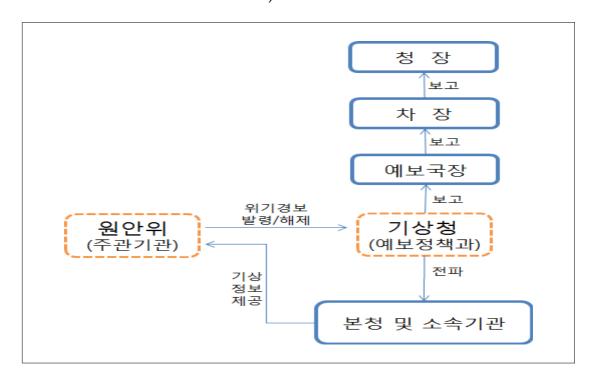
^{※ (}방사선비상 이전) 위기경보 수준(관심, 주의)에 따라 관련 절차를 수행 (방사선비상 이후)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규정된 절차 이행

나. 위기경보 절차

- (1) 주관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은 소관분야에 위기 징후가 포 착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위협 또는 위험 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운영 하고 평가 및 판단 결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
- (2) 위기평가 시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국내의 여론, 정부의 대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 (3) 주관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은 위기경보 발령 시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및 관련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범정부차 원의 평가와 조치가 요구되는 수준(심각)의 경보 발령 시 에는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 및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 의 하에 경보 발령
- (4) 심각단계 위기경보 수준을 수정 및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 우에는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 및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
- (5) 주관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은 제4항에도 불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위급상황의 경우에는 사전조치(경보발령 등)를 시행한 후 즉시 국가안보실과 행정안전부에 통보

(6) 기상청 상황전파

○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방사선비상을 접수받은 **예보정 책과장**(또는 사무관)은 청장, 차장, 예보국장에게 보고(유 선 또는 구두)하고 전부서 및 소속기관에 상황을 전파(문 서 또는 영상회의 활용)



7. 비상근무체계

가. 구성원별 임무

구 분	주 요 임 무
방재본부장 (청장)	▶ 방재본부 업무 총괄
방재부본부장 (차장)	▶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 사고 시 직무 대행
방재기상본부장 (예보국장)	▶ 방재기상 업무 총괄, 방재본부장 및 방재부본부장 보좌
방재기상지원부 (예보정책과장)	▶ 위험기상 관계기간 협력 업무, 방재기상본부장 보좌
국가기상센터 (총괄예보관)	▶ 기상상황 감시, 분석 및 유관기관 기상상황 전파
지방본부 (지방청·기상지청,항공청)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기상정보 제공
특별대응반	▶ 위기경보 보고 및 전파, 사고지역 기상실황 등 기상정보 제공

나. 비상단계별 근무편성 기준

=	구 분 근무기준		근 무 편 성	인 원
사	전대비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 건물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	∘예보반(47명) - 총괄예보관 5, 지방청·지청 42	47명
비상	비상2급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	∘ 예보반(47명) ∘ 특별대응반(2명) - 상황반 1, 지원반 1	49명
8 단 계	비상1급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 밖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	예보반(47명)특별대응반(4+α명)상황반 1, 지원반 2+α명	50+α명

IV.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IV.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1. 백색비상(White)

가. 상 황

구 분	정 의	대응조치
백색비상	○ 방사성물질의 밀봉상태의 손상 또는 원자력시설의 안전상태 유지를 위한 전원공급기능 손 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고 ○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 건물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상태	 비상발령보고, 상황전파 사고확대방지응급조치 원자력사업자 비상대응시설의 운영 지역방재대책본부 발족 운영 (상황실 및 연합 정보센터)

≫ 개 요

0000년 00월 00일, 00원전 0호기가 안전주입계통 주입배관의 소규모 누설로 냉각재가 00 누출됨(백색비상 발령조건 이상)

* 발생한 위기 상황에 대한 개략적 내용 기술

ᢧ 세부 내용

⊙ 위기정보 입수 : 0000년 00월 00일 00:00

○ 장소 : 00 원자력발전소 0호기

• 사고개요 : 00 원전 0호기 사고 진행에 대한 개요 기술

○ 피해상황 : 사상자 0 명, 방사선피폭환자 00명

○ 원자력사업자의 대응활동 현황

○ 기타 : 특이사항

나. 조치사항

(1) 조치목록

조치사항	세부내용	비고
위기상황 접수	o 방사선비상 발령(원자력안전위원회) o 위기상황 접수	예보정책과
상황전파	o 위기상황 전파	예보정책과
기상지원 준비상태 점검	o 사고 지역에 대한 기상상황 감시 강화 o 기상에 관한 기류분석 등 기상정보 준비 점검 o 방재비상근무 발령 점검	예보정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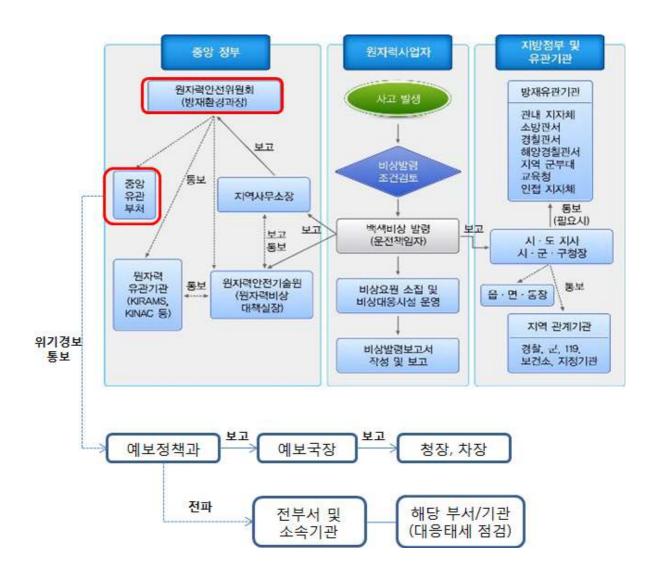
(2) 조치내용

- 위기상황 접수
 - 방사선비상 위기발령 주관부서(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 터 위기상황을 예보정책과에서 접수
- 상황전파
 -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방사선비상을 접수받은 예보 정책과장(또는 사무관)은 청장, 차장, 예보국장에게 보 고(유선 또는 구두)하고 전부서 및 소속기관에 상황을 전파(문서 또는 영상회의 활용)
- 기상지원 준비상태 점검
 - 사고 지역에 대한 기상실황에 대하여 감시를 강화하고, 기상에 관한 기류분석 등 기상정보 지원에 대하여 점검
 - 위기발령이 상향 발령에 대비하여 방재비상근무 발령 을 점검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 (1) 예보정책과
 - 방사선 위기경보 전파
 - 신속한 상황변화 및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 채널 강화
 - 방재기상비상 발령 준비 점검
- (2) 총괄예보관
 - 사고지역에 관한 기상실황 감시 강화
- (3) 대변인실
 - 사고관련 언론 모니터링 실시
- (4) 수치모델개발과
 - 기류분석 지원용 수치자료 생산 점검
- (5) 환경기상연구과
 - 기상에 관한 기류분석 지원 점검
- (6) 지방청 ㆍ지청
 - 사고지역에 대한 기상실황 감시 및 분석 강화
 - 지자체 및 현장지휘센터 등에 관한 기상지원 준비 점검
 - 공항 및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기상정보 제공 점검(항공청)

라. 대응체계도



< 원자로 현황 및 현장지휘센터 담당관서 >

원전명	소재지	기상관서
고리원전(6기)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지방기상청
한빛원전(6기)	전라남도 영광군	광주지방기상청
월성원전(6기)	경상북도 경주시	대구기상지청
한울원전(6기)	경상북도 울진군	대구기상지청
하나로(1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지방기상청
새울원전(4기)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산지방기상청

마. 유관기관 임무와 역할

	구 분	임무와 역할
	징 후	o 사고를 일으키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은 나타나지 않지만 안전 계통에 심각한 기능 상실 상황 발생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o 위기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o 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초기·후속 대응반 운영 o 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
		o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o 후속대응 및 복구
	국무조정실	o 위기정보·상황 종합 o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링
	원자력안전 위원회 (주관기관)	o 비상발령보고, 상황 전파 o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 및 예비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발족운영 o 유관기관 초기 비상대응조직 발족 및 상황 관리 지시 o 위기징후 변화양상 모니터링, 연합정보센터 대응활동 지원 o 현장지휘센터 파견요원 긴급이송 헬기지원 "준비" 요청
기관별	행정안전부	o 위기상황 모니터링 강화 o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협조)사항을 유관부서 및 지자체에 통보
임무 역할	국방부	
	경찰청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인원파견 및 공중 방사능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준비 ← 원안위가 백색단계에서 준비요청
	소방청	
	지자체	o 예비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상황실, 연합정보센터) 발족·운영 o 비상상황 파악, 관계기관 통보
	한국수력 원자력(주) 및 한국원자력 연구원	o 소내 비상대응시설 운영(연구원 : 비상대책본부 발족·운영) o 사고 확대 방지 및 원인 조사 o 시설 내외 환경방사능 감시 강화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o 예비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발족·운영 o 전문가단 현장 파견 준비 o 환경방사능감시 활동 강화 o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AtomCARE) 운영 확대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o 핵물질의 운반에 대한 방호조치 강화
	한국원자력 의학원	o 예비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발족·운영 o 의료지원반 및 현장의료지원단 현장 파견 준비

2. 청색비상(Blue)

가. 상황

구 분	정 의	대응조치
청색비상	o 백색비상에서 안전상태로의 복구기능의 저하로 원자력시 설의 주요 안전기능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 o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상태	• 백색비상 대응조치 수행 • 원자력사업자 비상대책본부 발족 운영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발족 운영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발족 운영 • 기술 및 의료 지원 조직 운영 • 지역방재대책본부 확대 운영

≫ 개 요

0000년 00월 00일, 00원전 0호기 냉각재 누설사고로 작업종사자의 급성 방사선장해(1Gy 이상 피폭) 발생(청색비상 발령조건 이상)

* 발생한 위기 상황에 대한 개략적 내용 기술

ᢧ 세부 내용

○ 위기정보 입수 : 0000년 00월 00일 00:00

○ 장소 : 00 원자력발전소 0호기

• 사고개요: 00 원전 0호기 고장 사고 진행에 대한 개요 기술

• 원자력사업자의 대응활동 현황

○ 기타 : 특이사항

나. 조치사항

(1) 조치목록

조치사항	세부내용	비고
위기상황 접수	o 방사선비상 발령 접수	예보정책과
상황전파	o 자체 대책회의 및 점검회의	예보정책과
0 중 선거	o 위기상황 보고 및 전파	
	o 청장(중대본회의 위원) 본부회의 참석(소집시)	
	o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연락관 파견(요청 시)	
대응조치	o 현장지휘센터 요원 파견(요청 시)	
	o 기상실황 및 예보 등의 기상지원(요청시)	
	o 공중 환경방사능 탐사 지원(항공기 등) 준비	

※ 표준매뉴얼상 기상청은 '기상에 관한 기류분석 준비' 단계이나, 중앙방사능방 재대책본부 및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발족·운영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

(2) 조치내용

- 위기상황 접수
 - 방사선비상 위기발령 주관부서(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위기상황을 예보정책과에서 접수
- 상황전파
 -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방사선비상을 접수받은 예보정책과장 (또는 시무관)은 청장, 차장, 예보국장에게 보고(유선 또는 구두)하고 전부서 및 소속기관에 상황을 전파(문서 또는 영상회의 활용)
- 대응조치
 - 청장(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위원) 본부회의 참석(소집 시)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연락관 파견(요청 시)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현장요원 파견(요청 시)
 - 기상 실황 및 예보 등에 관한 기상지원
 - 위기경보에 따른 우리청 대응에 관한 대책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논의를 위한 대책(점검)회의 개최(필요 시)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1) 예보정책과

- 방사선 위기경보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수신하여 전 부서 및 소속기관에 전파
- 방사선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비상근무 운영(필요 시)
 - 특별대응반 구성·운영 준비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회의(청장 참석) 개최여부 점검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연락관 파견(요청 시)
- 대책회의(점검회의) 개최(필요 시)
 - 위기경보에 따른 우리청 대응에 관한 대책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논의

(2) 총괄예보관

- 사고지역에 대한 기상실황 및 예보자료 제공
 - 방재기상정보시스템(afso.kma.go.kr)을 통한 실시간 제공
- 기상에 관한 기류분석 자료 작성 준비(요청 시에는 제공)

(3) 대변인실

- 주관기관의 언론대응에 관한 지원
- 기상에 관한 언론 요청자료 파악 및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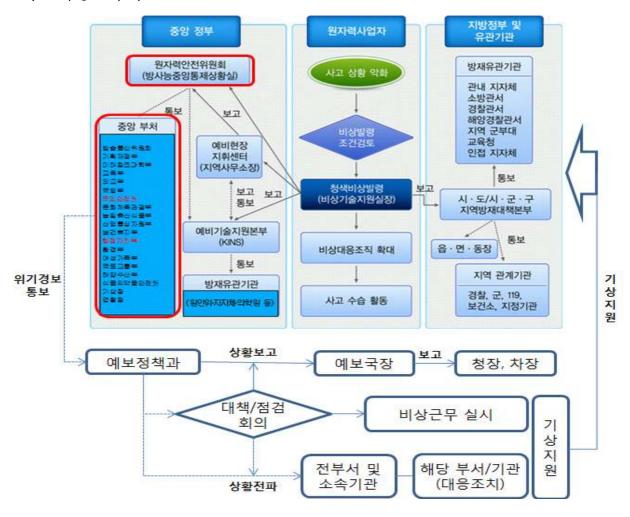
(4) 수치모델개발과

- 기류분석 지원용 수치자료 생산
- (5) 환경기상연구과
 - 기상에 관한 기류분석 자료 작성 지원

(6) 관측예보연구과

- 공중 환경방사능 탐사 지원(항공기 등) 준비
- (6) 지방청 ㆍ지청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현장요원 파견(요청 시)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대한 기상정보 제공
 - 공항 및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기상정보 제공 점검 (항공청)

라. 대응 체계도



< 원자로 현황 및 현장지휘센터 담당관서 >

원전명	소재지	기상관서
고리원전(6기)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지방기상청
한빛원전(6기)	전라남도 영광군	광주지방기상청
월성원전(6기)	경상북도 경주시	대구기상지청
한울원전(6기)	경상북도 울진군	대구기상지청
하나로(1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지방기상청
새울원전(4기)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산지방기상청

마. 유관기관 임무와 역할

	구 분	임무와 역할	
	징 후	o 사고를 일으키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는 안전계통에 심각한 기능 상실 상황 발생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o 위기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o 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초기·후속 대응반 운영 o 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	
		o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o 후속대응 및 복구	
	국무조정실	o 정부 대응방향 제시 o 비상대책 시행 등 범정부 대응활동 조정 o 정부 대응활동 종합점검·평가 및 협의·조정	
	원자력안전위 원회 (주관기관)	o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및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발족·운영 o 상황 대응 총괄 조정 및 현장 대응활동 지휘·통제 o 유관기관 상황 전파 및 협조 요청 o 연합정보센터를 통한 언론대응 일원화 및 재난방송 협조 요청 o 안전취약계층 사전소개 건의 검토·결정	
기관별 임무 역할	유관기관 (공통)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실무반 인원 파견 - (해당기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실무반 인원 파견 - (해당기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해당지역 군부대·경찰청·교육청·기상청·해경서·소방서, 지자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사업자 등 * 단, 현장지휘센터의 행동매뉴얼에 따라 실무반 신축 편성 	
	방송통신 위원회	o 대국민 홍보를 위한 재난방송 지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o 원자력 연구기관 인력·장비 활용 지원 o 대국민 홍보를 위한 재난방송 지원 o 연구용원자로 복구 지원	
	교육부 (교육청포함)	o 구호시설(학교) 지정·운영 관련 협조·지원 o 학생 대피 관련 협조·지원	
	외교부	o 재난상황에 대한 국제간 정보교환 지원 o 외국인 사상자 발생 시 관련상황 전달	
	국방부 (군부대포함)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인원파견 및 공중 방사능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행정안전부	o 지자체 단체장회의를 통한 지시사항 전달 및 지자체 요구사항 수렴 o 위기상황 모니터링 강화 o 방사능지원본부 운영(필요시) o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협조)사항을 유관부서 및 지자체에 통보	

구 분	구 분 임무와 역할	
	o 지자체 방사선비상경보방송 지원(비상경보방송시설·민방위방 송 활용), 재난온라인방송 및 재난문자전송지원(원안위 요청시)	
문화체 ^원 관광부		
농림축 <i>(</i> 식품부	- 이 구대 까지(으로까) 포스자루에 내야 마셔트으면 거쳐! 꽈리 수비	
산업통 <i>선</i> 자원부	11 OF 1	
보건복지	<mark>부</mark> o 필요시 현장응급의료 지원 등	
환경부	o 먹는 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관리·검사 준비	
국토교통	o 해당지역 항공기 운항 통제 준비	
해양수산	· · · · · · · · · · · · · · · · · · ·	
식품의약 안전처	·관리 준비	
경찰청	0 연상망자등망재지위센터 인원파건 및 공동 망자등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기상청	0 공동 완성망사능 남자 시원(양공기 등) 문미	
해양경찰	이 애왕 완성방사는 남자 시권(경미성 등) 눈미	
소방청	o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준비 및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o 방사선 감시활동 지원 및 협조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인원파견 및 공중 방사능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o 구호소 주민 불안 감소를 위한 실시간위성중계(SNG) 차량 지 원 준비	
지자체	o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확대·운영 o 주민보호조치 시행 준비 o 안전취약계층 사전소개 검토·건의	
한국수력 원자력(2 및 한국원자 연구원	o 비상대책본부 발족·운영 o 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 환경방사능 감시 강화 <mark>력</mark> o 사고확대방지, 원인 조사, 제염활동 및 응급조치	
한국원자 안전기술	<u> </u>	
한국원자 통제기술	이 사와에 바라 아무의 우다네야 오도	
한국원자 의학원		

3. 적색비상(Red)

가. 상 황

구 분	정 의	대응조치
	o 노심의 손상 또는 용융 등으로	
	원자력시설의 최후방벽에 손 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 청색비상 대응조치 수행
적색비상	있는 사고 o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부지 밖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상태	방사능재난 발생 선포 검토원자력시설 주변 주민에 대한 보호조치 실시

ᢧ 개 요

0000년 00월 00일, 00원전 0호기에 중대한 노심손상이 발생하고 방사능누출로 종사자가 치사량(5Gy)이상 피폭되는 사고가발생

* 발생한 위기 상황에 대한 개략적 내용 기술

ᢧ 세부 내용

○ 일시 : 0000년 00월 00일 00:00

○ 장소 : 00 원자력 발전소(지역 이름)

○ 피해 : 피해 내용 기술

○ 방사능 누출정보

- 누출 핵종 및 누출량 : 0000

- 확산 예상지역 및 거리 : 0000

- 금후 누출 예상량 : 0000

≫ 기 타

○ 기상 상태 : 0000

○ 기술적 내용 : 0000

○ 언론보도 내용: 0000

나. 조치사항

(1) 조치목록

조치사항	세부내용	비고
위기상황 접수	o 방사선비상 발령 접수	예보정책과
사하고	o 자체 대책회의 및 점검회의	세버거케키
상황전파	o 위기상황 보고 및 전파	예보정책과
	o 청장(중대본회의 위원) 본부회의 참석(소집시)	
	o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연락관 파견(요청 시)	
대응조치	o 현장지휘센터 요원 파견(요청 시)	
	o 기상에 관한 기류분석 자료 작성 및 제공	
	o 공중 환경방사능 탐사 지원(고정익 등)	

(2) 조치 내용

- 위기상황 접수
 - 방사선비상 위기발령 주관부서(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위기상황을 예보정책과에서 접수
- 상황전파
 -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방사선비상을 접수받은 예보정책과장 (또는 사무관)은 청장, 차장, 예보국장에게 보고(유선 또는 구두)하고 전부서 및 소속기관에 상황을 전파(문서 또는 영상회의 활용)
- 대응조치
 - 청장(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위원) 본부회의 참석(소집 시)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연락관 파견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현장요원 파견(요청 시)
 - 기상에 관한 기류분석 등 기상정보 지원
 - 위기경보에 따른 우리청 대응에 관한 대책 및 점검에 관한사항 논의를 위한 대책(점검)회의 개최(필요 시)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1) 예보정책과

- 방사선 위기경보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수신하여전 부서 및 소속기관에 전파
- 방사선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비상근무 운영
 - 특별대응반 구성 •운영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회의(청장 참석) 개최여부 점검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연락관 파견(요청 시)
- 대책회의(점검회의) 개최(필요 시)
 - 위기경보에 따른 우리청 대응에 관한 대책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논의

(2) 총괄예보관

- 사고지역에 대한 기상실황 및 예보자료 제공
 - 방재기상정보시스템(afso.kma.go.kr)을 통한 실시간 제공
- 기상에 관한 기류분석 자료 작성 •제공

(3) 대변인실

- 주관기관의 언론대응에 관한 지원
- 기상에 관한 언론 요청자료 파악 및 제공

(4) 수치모델개발과

○ 기류분석 지원용 수치자료 생산

(5) 환경기상연구과

○ 기상에 관한 기류분석 자료 작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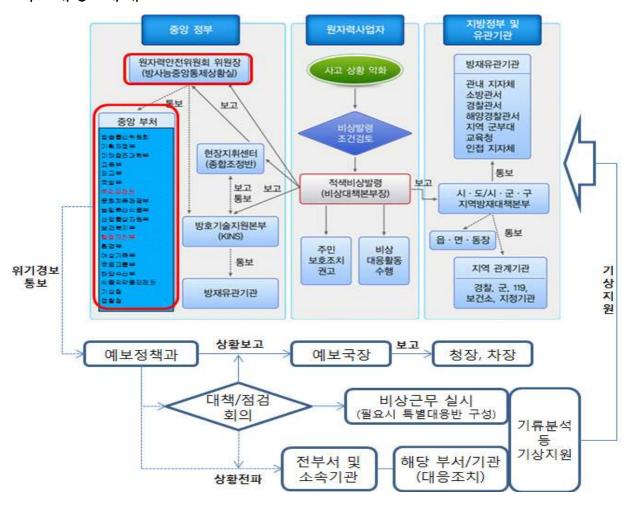
(6) 관측예보연구과

○ 공중 환경방사능 탐사 지원(고정익 등)

(7) 지방청 · 지청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현장요원 파견(요청 시)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대한 기상정보 제공
- 공항 및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기상정보 제공(항공청)

라. 대응 체계도



< 원자로 현황 및 현장지휘센터 담당관서 >

원전명	소재지	기상관서
고리원전(6기)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지방기상청
한빛원전(6기)	전라남도 영광군	광주지방기상청
월성원전(6기)	경상북도 경주시	대구기상지청
한울원전(6기)	경상북도 울진군	대구기상지청
하나로(1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지방기상청
새울원전(4기)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산지방기상청

마. 유관기관 임무와 역할

구 분	임무와 역할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o 위기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o 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초기·후속 대응반 운영 o 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
대통령비서실 (소관비서관실)	o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o 후속대응 및 복구
국무조정실	o 관련 동향 확인·평가 및 부처별 대응방안 협의·조정 o 방사능 누출 사고에 따른 재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사항 심의 o 정부 대응활동 협의·조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방사능방재 대책본부)	 ○ 방사능 재난 총괄 조정 및 현장대응 활동 지휘・통제 ○ 국가 환경 방사능 감시체계 운영 ○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연락체계 구축 ○ 방사능 재난 발생 선포(선포기준 해당 시) ※ 방사능 재난 발생 선포를 결정할 경우 지체없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연합정보센터의 언론대응 활동 지원 ○ 필요시 중앙정부 차원의 언론 대응 지원(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 ○ 언론·홍보 적절성 지속 검토 및 유관부처와 협의 ※ 대국민 홍보, 오보 대응 등 ○ 언론대응 및 정확한 정보전파 등 대국민 정보제공 ○ 장기 상황 관리 방안 수립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방사능방재 지휘센터)	o 현장방재 대응조직 총괄 o 재난 현장의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방사선 방호조치 o 합동방재대책협의회 자문을 받아 주민보호조치 등 주요 의사 결정 및 지역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시행 지시 - 예방적보호조치구역(PAZ) 지역 주민에 대한 즉시 소개 -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UPZ) 지역 등에 대한 긴급 주민보호조치(대피, 소개, 음식물섭취제한, 갑상선방호약품 복용 등) - 식료품, 음료품, 농산물 반출 및 소비 통제 - 위험(경계)구역 설정 및 통행 제한 등 o 對언론 창구인 연합정보센터 운영 강화 - 보도자료 배포(언론책임자가 수행) - 정기상황 발표(연합정보센터장) ※ 사고상황의 변동 내용과 대응활동 내용 주기적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o 대국민 홍보를 위한 재난방송 지원	
기획재정부	o 사고수습에 필요한 특별예산 지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o 원자력연구기관 활용 인력·장비 및 상황 분석 지원 o 국내·외 긴급 통신수단 지원 o 대국민 홍보를 위한 재난방송 지원 o 연구용원자로 사고수습 및 시설복구 지원
교육부	o 구호시설 지정 협조 및 조정 o 피해예상지역 학생 대피 지원 o 피해예상지역에 대한 학사일정 조정 등 o 학교·연구기관 등의 언론대응활동 모니터링 및 관리 등

구 분	임무와 역할
외교부	o 재난상황에 대한 국제간 정보교환 o 국내 외국 대사관에 대한 사고 상황 통보 o 외국의 지원 협조에 대한 정부 대응 창구 운영 o 외국인 사상자 발생 시 관련상황 전달
국방부	o 주민 보호 및 제염을 위한 인력(군, 예비군)/장비 지원 o 공중 방사능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o 방사능 측정 및 평가를 위한 인력/장비 지원
행정안전부	 지자체 관련부서 회의를 통한 지시사항 전달 및 지자체 요구사항수렴 위기상황 모니터링 강화 방사능지원본부 운영(필요시) 피해지역 인력 및 재정지원 방안 강구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지원 주민행동요령 홍보 및 재난상황 전파(재난온라인방송, 재난문자전송 등) 피해수습 전문인력 파견(특수재난실, 민간전문가 등) 방사능 오염지역(지자체) 동향 및 오염수습상황 관리 지자체 주민보호조치 대응활동 지원 주민대피를 위한 긴급이송 차량・선박・헬기 등 투입 지원 이재민 수용시설, 구호물품 등 재난구호물자 수급
문화체육관광부	o 가용매체 활용 대국민 홍보 및 재난발생 내용 발표 지원 o 언론인터뷰가이드 제공 등 언론 대응활동 지원 o 유언비어로 인한 사회혼란 대응
농림축산식품부	o 국내 생산(유통전) 농축산물에 대한 방호 조치 o 국내 생산(유통전) 농축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통제
산업통상자원부	o 원전사업자의 사고수습 및 시설복구 지원 o 전력 수급지원 o 공산품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 지원
보건복지부	o 필요시 현장응급의료 지원 등 o 지역 안정화를 위한 지역 주민 심리 개입 o 심리안정화를 위한 전담팀 현장 파견 지원
환경부	o 방사능오염에 의한 급수 중단 대비 비상급수체계 확보 o 환경매체 방사능오염 검사 지원 o 먹는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관리·검사
국토교통부	o 오염제거를 위한 중장비 지원 o 필요시 긴급물자 및 인력수송을 위한 교통수단 지원 o 공항 방사능오염검사 및 방사선환경관리 지원 o 피해 지역 항공기 운항 제한 등
해양수산부	o 항만 방사능오염검사 및 방사선환경관리 지원 o 어항 및 수산시설보호 o 피해지역 생산 수산물(유통전)에 대한 방사능오염 관라검사, 출하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o 피해 지역의 유통 중인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 대한 방사 능오염 관리검사, 섭취제한 및 유통·소비 통제
경찰청	o 지역본부와 협력하여 주민보호조치 지원 및 주민통제 수행 - 주변지역에 대한 특이상황 감시, 치안유지 활동 · 주민소개 지역에서의 재산보호 · 소개 지역내 출입 제한조치 - 대규모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인력, 장비동원

구 분	임무와 역할
	· 경찰은 주민의 소개 이동에 따른 교통통제를 실시 · 이동경로 할당과 출발일정 조정
	· 이동 중 고장 또는 사고차량의 처리
기상청	o 기상에 관한 기류분석 정보 제공 o 공중 환경방사능 탐사 지원(고정익 등)
	o 사고지역 해역에 대한 어로 금지, 선박운항 통제
해양경찰청	o 특수구조대(해양) 가동 긴급구조(필요시) o 해양 환경방사능 탐사 지원(경비정 등)
	o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및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소방청	o 특수구조대(119) 가동/ 인명 구조, 긴급 수송 o 방사성 오염 시설 제염/ 방사선 감시활동 지원 및 협조
	o 구호소 주민 불안 감소를 위한 실시간위성중계(SNG) 차량 지원
	o 상황실 운영 및 상황 전파 o 민방위대 동원령 선포
	o 주민대피 범위·방법 설정 및 수송대책 강구
교	o 오염지역 출입 통제를 위한 유관기관(군·경) 협조 요청 o 유관기관 긴급 구조·구난 협조요청
광역단체 (시·도)	o 유관기관 의료지원, 인명구조 및 후송 등 협조요청 o 국토교통부·경찰 등 교통대책 협조요청
	o 시·도 단위 유관기관 협조요청
	o 광역 주민보호조치 필요시 광역 치원의 구호소 운영 및 관할 사군구 지원 o 장기 주민보호조치 계획 수립·시행
	o 공중 방사능감시를 위한 헬기지원(광역지자체 소방본부) 등
	o 상황실 운영 및 상황 전파 o 동원 민방위대원 임무 부여
	o 주민소개 유도요원 배치 및 주민소개 조치
기초단체	o 이재민 수용·구호 o 갑상선방호약품 배포 및 복용 조치
(시·군·구)	o 긴급 구조·구난 활동(유관기관 합동)
	o 출입통제소 및 교통통제소 설치·운용 o 시·군구 단위 유관기관 협조요청
	o 지역대책본부에 피해접수 센터 설치 등 - 실종자 및 사상자 파악, 관련 정보 제공 등
	ο 사고 정보수집
	- 운전상황 보고자료·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AtomCARE) - 시스템 정보, 환경 방사선 감시 결과
	ㅇ 사고 해석
한국원자력안전	- 사고원인, 사고정도·진행과정 예측 - 방사선 영향·환경 영향
기술원	o 평가 종합 - 방사성 물질 방출여부, 사고 수습대책 강구
	- 시설의 위험도 평가
	o 수습 및 안전대책 강구 o 방사선 관련 대국민 상담을 위한 전용 전화 및 홈페이지 운영
	o 방사선방호 관련 기술자문단 운영
하그인지런이하이	o 사고 정보 수집 - 피폭환자 발생 예상 규모 등
한국원자력의학원	o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 가동 - 전국방사선비상진료기관 대응태세 유지
	연극이시언비중인표기선 대중대세 휴시

구 분	임무와 역할		
	o 국민 심리안정화를 위한 상담 전용 전화 및 홈페이지 운영		
	o 심리안정화를 위한 전담팀 운영 지원		
한국수력원자력(주) o 비상대책본부 지속 가동			
및	o 방사선비상계획 구역내 환경방사능 지속 감시		
한국원자력연구원	o 사고수습, 원인 조사, 제염활동 및 응급조치		

V. 재난상황별 조치내용 및 절차

V. 재난상황별 조치내용 및 절차

1. 발생상황 I

가. 상 황

o 개요

0000년 00월 00일, 00원전 0호기 원자로건물 운전지역 방산선감시기 경고경보 발생 및 원자로냉각제 미확인 누설 증가추세 진행

· 발생한 위기 상황에 대한 개략적 내용 기술

o 세부내용

- 위기정보 입수 : 0000년 00월 00일
- 장소: 00원자력발전소 0호기
- 사고개요 : 00원전 0호기 고장사고 진행에 대한 개요기술
- 피해상황 : 사상자 0명, 방사선피폭환자 00명
- 원자력사업자의 대응활동 현황
- 기타 : 특이사항

나. 조치사항

(1) 조치목록

조치사항	세부내용	비고
위기상황 접수	o 방사선비상 발령 접수	예보정책과
상황전파	o 자체 상황판단(대책)회의 o 위기상황 보고 및 전파	예보정책과
대응조치	o 청장(중대본회의 위원) 본부회의 참석(소집시) o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연락관 파견(요청 시) o 현장지휘센터 요원 파견(요청 시) o 기상실황 및 예보 등의 기상지원 실시	총괄예보관, 지방청·지청

(2) 조치내용

- 위기상황 접수 및 상황전파
 - 방사능 위기경보를 관련부서 및 소속기관에 전파
 - 범정부차원의 비상대응 활동이 요구되는 경우 방재비 상근무 실시 및 특별대응반 편성 ·운영

[위기대응 특별대응반 구성]

ㅇ 반장 : 예보국장

ㅇ 구성 : 예보정책과, 총괄예보관, 대변인, 수치모델개발과, 환경기상연구과,

관측예보연구과, 지방청 ·지청(사고 관할관서)

ㅇ 운영: 비상설기구로 운영

ㅇ 기능 : 방사능재난 대응을 위한 기상지원에 관한 업무수행

○ 대응조치

- 청장(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위원) 본부회의 참석(소집 시)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연락관 파견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현장요원 파견(요청 시)
- 기상에 관한 기류분석 등 기상정보 지원

(3) 체크리스트

ㅈ ᅱ 저 ᅱ.	차 조 치 내 용	수행여부		ш ¬
조치절차		YES	NO	비고
상황접수	o 방사능 위기경보 접수			
	o 위기상황 보고 및 전파			
상황전파	o 자체 대책(점검)회의			
	o 위기경보단계에 따른 특별대응반 구성			
	o 기상에 관한 기류분석 자료 작성 ·제공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현장요원 파견			요청시
대응조치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대한 기상정보 제공			
	o 공항 및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기상 정보 제공			
	o 공중 환경방사능 탐사 지원(고정익 등)			

다. 부서별 임무 및 역할

부 서	임무 및 역할		
	ㅇ 방사능 위기경보 주관부서(원안위)로부터 접수		
	ㅇ 위기경보의 보고 및 전파		
예보정책과	ㅇ 특별대응반 구성 •운영		
	ㅇ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연락관 파견(요청 시)		
	ㅇ 자체 점검(대책)회의 개최(필요시)		
	ㅇ 사고지역에 대한 기상실황 및 예보자료 제공		
총괄예보관	- 방재기상정보시스템(afso.kma.go.kr)을 이용한 실시간 제공		
	ㅇ 기상에 관한 기류분석 자료 작성 및 제공		
대변인	ㅇ 기상에 관한 언론보도 모니터링		
네란한	ㅇ 주관부서의 언론정책 지원		
수치모델개발과 ㅇ 기류분석 지원용 수치자료 생산			
환경기상연구과	ㅇ 기상에 관한 기류분석 자료 작성 지원		
<mark>관측예보연구과</mark>	ㅇ 공중 환경방사능 탐사 지원(고정익 등)		
	ㅇ 기상실황 감시 및 분석		
지방청 • 지청	ㅇ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현장요원 파견(요청 시)		
MGG *MG	ㅇ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대한 기상정보 제공		
	ㅇ 공항 및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기상정보 제공(항공청)		

라. 경보단계별 부서별 조치사항

구분	백색(White)	청색(Blue)	심각(Red)
예보 정책과	①위기경보 전파 ②기상지원을 위한 주관· 관련기관과의 협력 강화 ③빙재기상비상 발령 준비 점검	①같음 ②특별(음반구성·운영(필요시) ③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회 의 개최여부 점검 ④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연락된 교견(요청시) ⑤대책(점검)회의 개최(필요시)	① 같음 ② 특별대응반 구성 · 운영 ③ 같음 ④ 같음 ⑤ 같음
총괄 예보관	①사고지역에 관한 기상실 황 감시 강화	①사고지역에 대한 기상자료 제공(방재기상정보시스템) ②기상에 관한 기류분석자료 작성준비(요청시 제공)	①같음 ②기상에 관한 기류분석자료 작성·제공
대원실	①기상에관한 언론모니터 링	①주관기관의 언론대응에 관한 지원 ②기상에 관한 언론 요청자료 파악 및 제공	①같음 ②같음
수지도델 개발과	①기류분석 지원용 수치자 료 생산 점검	①기류분석 지원용 수치자료 생산	① 같음
환경/상 연구과	①기상에 관한 기류분석 지원 점검	①기상에 관한 기류분석 자 료 작성 지원	① 같음
관측예보 연구과		①공중 환경방사능 탐사 지 원(항공기 등) 준비	①공중 환경방사능 탐사 지 원(고정익 등)
지방청, 지청	①시고자역에 대한 기상실황 감시 및 분석 강화 ②지자체 및 현장자후센터 등에 관한 기상자원 점검 ③공항 및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 제공 점검(항공청)	①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현장요원 파견(요청 시) ②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대한 기상정보 제공 ③공항 및 항공기 인전운항을 위한 기상정보 제공 점검 (항공청)	①같음 ②같음 ③공항 및 항공기 인전운항을 위한 기상정보 제공(항공 청)

Ⅵ. 기관대응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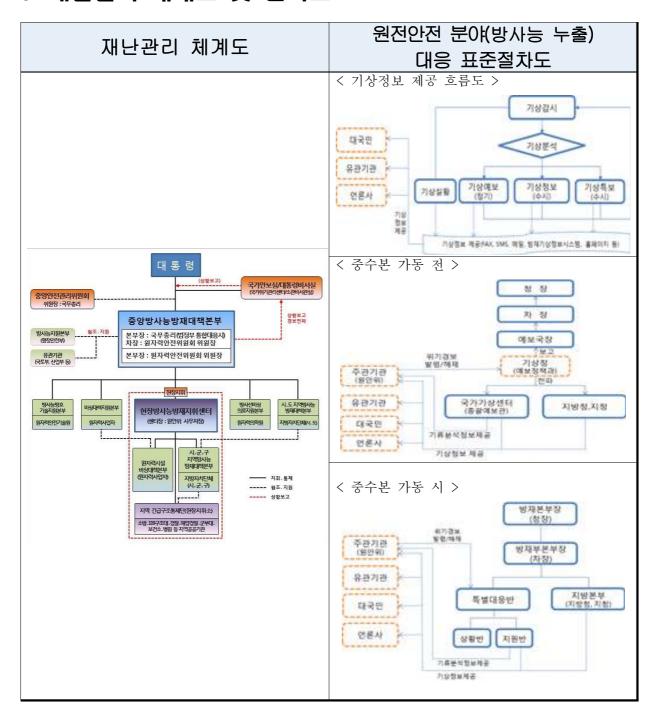
기관대응수칙은 매뉴얼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재난유형별 주요 단계에서 지휘부와 핵심 대응부서가 판단하고 조치할 행동절차를 규정 유형 : 원전안전

주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리번호 : 사회재난-9

관련 매뉴얼 「원전안전분야(방사능누출)」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전안전 분야」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 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기상청, 해양경 찰청, 소방청

1. 재난관리 체계도 및 절차도



2. 기상청 원전안전(방사능누출) 대응 프로세스

구	분	재난발생 단계 (상황접수 및 보고·전파)	초기대응 단계	범정부적 총력대응 단계 (중수본 / 중대본에 관한 기상지원)	수 습 복 구 단 계
재난	국가 기상 센터	 사고지역 기상상황 감시 →사고상황 파악 병행 방재기상정보시스템(afso.kma.go.kr)을 이용함실시간 기상정보 제공 	사고지역 기상상황 감시 기상에 관한 기류분석서 작성 준비 방재기상정보시스템(afso.kma.go.kr)을 이용함 실시간 기상정보 제공	사고지역 기상상황 감시 기상에 관한 기류분석서 작성 ·제공 주요인사 상황실 방문 시 브리핑 실시	• 사고지역 기상상황 감시
초기 대응 부서 예보 정책 과		 초기 사고상황 파악 사고지역, 위치, 피해내용 등 주관기관(원안위)과의 협의채널 확인 청·차장, 실·국장, 대응소관부서 전파 	 원안위 상황보고서 확인 및 전파 - 피해규모 및 대응상황 파악khg - 사고지역, 위치, 피해내용 등 원안위 요청사항 대비 - 기류분석서 작성 대비 - 기상전문가 파견 대비 	 피해 및 대처상황 모니터링 - 중대본 및 중수본 상황보고서 전파 관계기관과의 협력 총괄 재난상황 전개에 따라 특별대응반 운영 실무 - 원안위 요청 시 기상전문가 파견 주요인사 상황실 방문 시 지원 	원안위 상황보고서 확인 및 전파우리청 소관업무에 관한 사고수습 지원 대책 강구
청 •	차장	초기상황 파악(보고:예보정책과장) - 기상예 · 특보 현황 - 피해 및 대처 상황 파악	 기상 및 사고상황 파악 기상 예 · 특보 현황 피해현황, 조치사항, 대응태세 등 우리청 조치 준비상황 점검 지시 	 기상상황 파악 및 대응현황 점검 방재기상 점검(대책) 회의(영상회의) 필요시 재난 현장 방문 관련회의 참석 중앙안전관리위원회(청장) 안전정책조정위원회(차장) 	필요시 재난현장 방문 등 재난 수습에 필요한 기상지원 검토지시
예노	!국장	기상상황 파악 및 사고현황 파악기상 예보 및 특보 등- 피해 및 대처 상황 파악	기상 및 사고상황 파악사고지역 기상상황파악관할지역 기상관서에 기상지원 점검	 재난상황 전개에 따라 특별대응반 운영 기상정보 지원 현황 점검 사고지역 기상관서에 기상지원 강화 요청 청·차장 재난현장 방문 시 수행 	청·차장 사고현장 방문 시 수행 재난 수습을 위한 추가 기상지원 검토
대학	변 인	• 기상에 관한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대응	당 ● 기상에 관한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대응	 기상에 관한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대응 부정확・미확인 보도(오보 등) 대처 기상에 관한 언론 대응 언론사 요구사항 파악 및 정보제공 중수본/중대본의 언론대처 정책 지원 	 기상에 관한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대응 부정확・미확인 보도(오보 등) 대처 기상에 관한 언론 대응 언론사 요구사항 파악 및 정보제공 중수본/중대본의 언론대처 정책 지원

3. 기상청 부서별 협업기능(원전안전 방사능누출)

기능	① 재난상황관리	
주관부서	예보정책과, 국가기상센터(총괄예보관, 지방청, 지청)	
연계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주요업무	○ 재난상황관리를 위한 기상정보 지원 ● 사고지역 기상상황 감시 및 분석 ● 사고지역에 관한 상세기상정보 제공 ● 기상예보 및 특보 발표 ● 방재기상정보시스템(afso.kma.go.kr)을 이용한 실시간 기상정보 제공 ○ 방재기상 업무 수행 ● 중대본/중수본 전달(지시) 전파 — 위기경보 단계 등 ● 재난사고 전개에 따라 특별대응반 설치운영 — 기상에 관한 기류정보 제공 — 현장방사능지휘센터 등에 현장요원 파견(요청시)	

기능		⑪ 재난수습홍보
주관		대변인
연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문체부, 방통위 등
주요업무		○재난수습홍보를 위한 기상정보 지원 ● 기상에 관한 언론대응 및 브리핑 ● 오보 및 유언비어 모니터링 및 대응

4. 관계기관 주요 임무(원전안전 방사능누출)

부 처	초기 대응 단계 • 예비현장지휘센터 중대본 운영 • 현장지휘센터		스스. 보그다게	
一	방사선 백색비상 발령시	방사선 청색・적색비상 발령시	수습·복구단계	
원자력안전 위원회	■비상발령보고 및 상황 전파, 대책회의 개최 ■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 및 예비현장지휘센터 발족・운영 ■ 유관기관 초기 비상대응조직 발족 및 상황 관리 지시 ■ 위기징후 변화양상 모니터링, 연합정보센터 대응활동 지원 ■ IAEA 조기통보 및 인접국 통보 ■ 현장지휘센터 파견요원 긴급이송 헬기지원 준비"요청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및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발족 ■ 운영 ■ 비상상황 대응 총괄 조정, 현장 대응활동 지휘 ■ 통제 ■ 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협조 요청, 연합정보센터 운영 언론대응 일원화, 재난방송 및 재난문자 요청 ■ 긴급 주민보호조치(대피・소개・음식물섭취제한・갑상선방호약품 복용 등) ■ 육・해・공중 환경방사능 탐사, 방사선비상진료소 운영 ■ 방사능재난 발생 선포・해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IAEA 조기통보 및 인접국 통보, 정보제공 재난홈페이지 개설 ■ 장기 상황 관리방안 수립 등	■ 사고의 수습 및 복구활동에 관한 계획 수립 ■ 합동조사위원회 설치 ■ 방사능재난 상황 조사 ■ 재난조사, 피해보상대책, 국가 차원의 방사능재난 사후대책 보고 ■ 외국의 사고 수습 및 복구기술 지원요청(필요시) ■ 원자력시설 및 비상계획구역내 복구 완료시 수습 및 복구완료 선언 ■ 지자체,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주민복귀 여부를 결정 ■ 주민복귀를 위한 상황정보 수집 및 평가	
국가안보실	■위기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초기·후속 대응반 운영	■재난상황 총괄관리 및 통합적 위기관리체계 가동	■재난상황 총괄관리 및 후속 대응반 운영	
대통령비서실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후속대응 및 복구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 후속대응 및 복구	
행정안전부	■ 위기상황 모니터링 강화 ■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협조)사항을 유관부서 및 지자체에 통보	■ 지자체 단체장회의를 통한 지시사항 전달 및 지자체 요구사항 수렴 ■ 방사능지원본부 운영(필요시) ■ 재난온라인방송 및 재난문자 전송 지원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현장 파견 ■ 피해지역 인력 및 재정지원 방안 강구	■상황 모니터링 강화 ■피해지역 인력, 장비 및 재정지원 방안 강구 ■방사능 오염피해 공동조사 참여	
국방부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지휘부 파견, 공중 방사능 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준비	■ 주민보호 및 제염을 위한 인력(군, 예비군) 및 장비 지원 ■ 방사능 측정 및 평가를 위한 인력 및 장비 지원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지휘부 파견, 공중 방사능 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교육부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구호시설(학교) 지정 및 운영 관련 협조·지원 ■피해예상지역 학생 대피 관련 협조·지원 ■피해예상지역에 대한 학사 일정 조정 ■학교·연구기관 등의 언론대응활동 모니터링 및 관리		
보건복지부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현장 응급의료 지원(필요시) ■지역 안정화를 위한 지역 주민 심리 개입 ■심리안정화를 위한 전담팀 현장 파견	■지역주민 및 대국민 심리안정화 지원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원전 사고시 원자력연구기관 활용 인력·장비 및 상황분석 지원 ■유언비어 차단, 언론 홍보활동 지원 ■국내외 긴급 통신수단 지원 ■대국민 홍보를 위한 재난방송 지원 ■원자력연구기관 운영 연구용원자로 복구 지원	■유언비어 차단, 언론 홍보활동 지원	
농림축산식 품부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국내 생산(유통전) 농축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관리 준비 ■국내 생산(유통전) 농축산물에 대한 방호 조치 ■국내 생산(유통전) 농축산물의 방사능오염에 관한 통제		
해양수산부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 국내 생산(유통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관리 준비		

부 처	초기 대응 단계 • 예비현장지휘센터	중대본 운영 • 현장지휘센터	수습·복구단계
T ^1	방사선 백색비상 발령시	방사선 청색・적색비상 발령시	구합'국구전계
		■ 항만 방사능오염 검사 및 방사선환경관리 지원 ■어항 및 수산시설 보호	
		■ 피해지역 생산 수산물(유통전)에 대한 방사능오염 관리·검	
		사 및 출하 제한 ■먹는 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관리·검사 준비	
환경부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 방사능오염에 의한 급수 중단 대비 비상급수체계 확보 ■ 환경매체 방사능오염 검사 지원	
		■먹는 물에 대한 방사능오몀 관리·검사 실시	
		■위기대응 관련 중장비 지원 ■해당지역 항공기 운항통제 준비	
국토교통부 -	■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오염제거를 위한 중장비 지원	
		■필요시 긴급물자 및 인력수송을 위한 교통수단 지원 ■공항 방사능오염검사 및 방사선환경관리 지원	
		■ 피해지역 항공기 운항 제한 실시 ■ 원전시설 복구 지원(소외전원 복구 관련 한전 지원 포함)	
산업통상 자원부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전력 수급 지원	
시트구		■ 공산품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 지원 ■ 언론대응 활동	
문화체육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 유언비어로 인한 사회혼란 대응	
관광부	1000 BT X = 1-10 0-1	■ 가용매체 활용 대국민 홍보 및 재난발생 내용 발표지원 ■ 언론인터뷰가이드 제공 등 언론대응활동 지원	
이코브	- 비사사하 저스 미 ㅁ니디리 가히	■재난상황에 대한 국제간 정보 교환	
외교부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국내 외국대사관에 대한 사고 상황 통보 ■외국의 지원협조에 대한 정부대응창구 운영	
기획재정부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 사고수습에 필요한 특별예산 지원	
식품의약품	■ 비사사하 저스 미 ㅁㅣ[디리 가히	■ 유통중인 농축수산물 및 가공 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관리 준비	
안전처		■ 피해지역의 유통중인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오염 관리·검사 및 출하 제한	
		■특이상황 감시 및 치안 유지	
경찰청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지휘부 파견, 공중 방사능 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준비	■ 주민소개시 교통통제 및 방사능오염지역 출입통제 실시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지휘부 파견, 공중 방사능 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기상청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 기상에 관한 기류분석 정보 제공 ■ 공중방사능 탐사 지원(항공기 등)	
		■해당지역 어로행위 및 선박운항 통제 ■해양방사능 탐사 지원(경비정 등)	
해양경찰청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지자체 주민보호조치 대응활동 지원	
		■ 특수구조대(해경) 가동 긴급구조(필요시) 등 ■ 공중방사능 탐사 헬기지원	
소방청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지휘부 파견, 공중 방사능 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준비	■지자체 주민보호조치 대응활동 지원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준비 및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확대 운영	■재난지역 중장기 방사능 영향 평가
	■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발족・운영	■ 주민보호조치 준비 점검 및 시행(수송수단 확보, 대피·소	■ 중장기 피해복구계획 수립(시행계획, 실시계획)
지방자하단체	■비상상황 접수 및 관계기관 통보	개, 갑상선방호약품배포 등) ■ 유관기관 협조 요청(주민소개시 교통통제, 오염지역 출입통	■재난지역 중장기 방사능 영향 평가 ■중장기 피해복구계획 수립(시행계획, 실시계획)
	■ 비상상황 모니터링 강화	제, 긴급 구조구난, 의료지원, 인명구조 및 후송 등)	■주민복귀를 위한 실시계획 수립
		■이재민 수용 및 구호, 피해접수센터 운영	■ 사후대책 수립

5. 비상연락망

□ 기상청

부서명 직 위		연 락 처	비고
예 보 국	국 장	02-2181-0491	
	과 장	02-2181-0492	
예보정책과	사 무 관	02-2181-0493	
	주 무 관	02-2181-0502	
국 가 기 상 센 터	총 괄 예 보 관	02-2181-0671~5	24시간근무
수치모델개발과	현 업 근 무 자	구내 1022	24시간근무

□ 원자력안전위원회(주관기관)

부서명	직 위		연 락 처	비고
방 사 선 방 재 국	국	장	02-397-7320	
	과	장	02-397-7351	
방 재 환 경 과	사 무	관	02-397-7357	
	주 무	관	02-397-7355	

□ 방사능방재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기관명	부서명	연 락 처	FAX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02-770-4380~5	02-770-4887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	044-200-2218	044-200-2225	
772782	안전환경정책관	044-200-2348	044-200-2367	
	방재환경과	02-397-7352, 7359	02-397-7362	
	원자력안전과	02-397-7287~8	02-397-7292	
	월 성 현 장 방 재 센 터	054-740-3605,3627	054-740-3610	
	결정 연정 정세 센 디	(0;)054-740-3653~4	034-740-3010	
	영 광 현 장 방 재 센 터	061-350-3605,3627	061-350-3610	
이기러시자이이정	3 3 2 3 3 4 4 4 1	(0;)061-350-3653~4	001-330-3010	
원자력안전위원회	0 기 처 기 비 게 게 미	054-780-3605,3627	054-780-3610	
	울진현장방재센터	(0;)054-780-3653~4	034-760-3010	
	그 기 줘 기 비 게 게 미	051-720-3605,3607,3627	051-720-3610	
	고리현장방재센터	(%)051-720-3653	031-720-3010	
	리기뒫기비레게디	042-612-3605~7	042-612-3610	
	대 전 현 장 방 재 센 터	(%)042-612-3605	042-012-3010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02-2110-1429	02-2110-0136	
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	044-215-7431	044-215-819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상안전기획관실	02-2110-2167	02-2110-0278	
4月月11日7日日7日日	원자력연구개발과	02-2110-2465	02-2110-0296	

기관명	부서명	연 락 처	FAX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044-203-6355,6893	044-203-6971
외교부	원자력외교담당관실	02-2100-8437	02-2100-8498
	재난관리지원과	02-748-5768	02-748-5778
국방부	합참화생방과	02-748-3284	02-796-0369
	지휘통제실(야)	02-748-0305	02-748-0544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02-3412-8064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044-205-1500	
	상황담당관	044-205-1540	
	상황 상황담당관실 (사회재난)	044-205-1541	044-205-8894
행정안전부	자 (자연재난팀장)	044-205-1542	044-205-8890
	상황담당관실 (자연재난팀원)	044-205-1543	
	환경재난대응과	044-205-6176~7	044-205-8947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정책과	044-203-2918	044-203-3483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044-201-2283	044-868-0461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관리과	044-203-5338	044-203-4768
C H O O T E T	종합상황실	044-203-4002~5	044-203-4790
보건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주간) 당직실(야간)	044-202-2654 044-202-2118	044-202-3989 044-202-3985
환경부	수도정책과	044-201-7126	044-201-7130
여성가족부	운영지원과	02-2100-6047	02-2100-6480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044-201-3793	044-201-5582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7,5288	044-200-5299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043-719-1723	043-719-1710
 경 찰 청	위기관리센터	02-3150-1641	02-3150-2661
0 2 0	치안상황실(야)	02-3150-1234	02-3150-3657~8
기상청	예보정책과	02-2181-0493,0502	02-847-4419
	국가기상센터	02-2181-0673~5	02-836-6755~6
해 양 경 찰 청	경비과	044-205-2441	
소방청	119구조과(주간) 119종합상황실(야간)	044-205-7625 044-205-1(~6)119	044-205-8986 044-205-8877
해당 경찰서	-	112	-
해당 소방서	-	119	_
해당 해경안전서	-	122	-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과 (원자력안전팀)	051-888-3021~3024	051-888-3019
부산 기장군	원전안전과	051-709-5472	051-709-5479
부산 해운대구	안전총괄과	051-749-6163,5	051-749-4939
부산 금정구	도시안전과	051-519-4653,4654	051-519-4969
울산광역시	원자력산업안전과	052-229-6020~5	052-229-6019
울산 울주군	원전정책과	052-204-1431~5	052-204-1419
울산 중구	안전총괄과	052-290-4052, 4062	052-290-4069
울산 남구	안전총괄과	052-226-3510,3515	052-226-5268
울산 동구	안전관리과	052-209-3671,3674	052-209-3669

9 9 8 5 8 0 7 9 4 9 7 2 8 4
8 5 8 0 7 9 4 9 7 2 8
5 8 0 7 9 4 9 7 2 8
8 0 7 9 4 9 7 2 8
0 7 9 4 9 7 2 8
7 9 4 9 7 2 8
9 4 9 7 2 8
4 9 7 2 8
9 7 2 8
7 2 8
2 8
8
4
-
3
9
9
8
9
3
042
0
9
9
0
3
0
6
0
9
~2
8
5
3 3

VI. 부 록

1.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1. 목표

 ○ 정부가 위기 시에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구조 활동을 지원하며, △피해자를 배려하는 한편, △위기관리 대응에 관한 정부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음

2. 기본 원칙

- 신속성: 정부는 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신속히 국민에게 전달해야 한다.
- ㅇ 일관성: 정부의 메시지는 하나의 목소리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 ㅇ 개방성: 정부는 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3. 위기단계별 점검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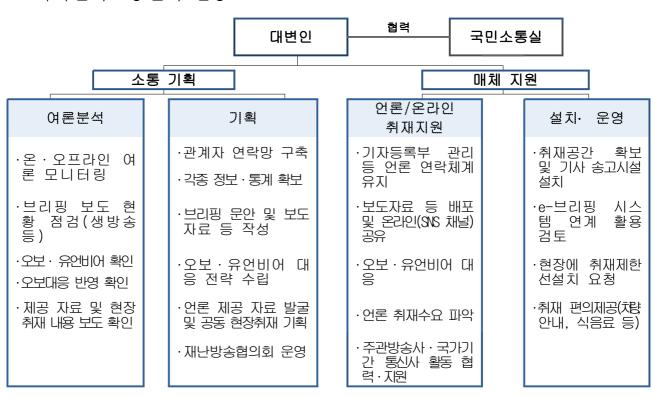
위기단계 위기 전 (pre-crisis)		점검사항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에 따른 교육훈련 ○ 재난 예방 및 보도에 관한 언론 협조사항 숙지 ○ 언론사 및 기자 명단 보유 ○ 온, 오프라인 위기 징후 파악 모니터링 및 상황 분석
위기(crisis)	위기발생	 이 위기관리(본부) 대책 회의 - 위기 비상체제 가부 결정 - 위기의 경중에 따라 위기관리 본부 설치 여부 결정 - 응급임무 부여/비상근무 개시 이 여론모니터링 - 오보, 유언비어 파악 및 브리핑 보도 현황 점검

		ㅇ 대변인 지정 및 위기관리소통센터 구성
		ㅇ 본부 및 현장에 취재지원센터(브리핑실) 설치
		ㅇ 위기 언론대응
		- 기자 연락
		- 브리핑 준비 및 실시(관계부처 협의)
		- 보도자료 배포
		- 재난방송협의회 운영
		- 접근제한선(폴리스라인) 설치 요청
		- 주관방송사와 국가기간 통신사 활동 협력, 지원
		ㅇ 위기 온라인 미디어 대응
		- 온라인 매체, 영향력자 파악 및 대응체계 구축
		ㅇ 홍보 전문 부서(국민소통실)와 협력
		ㅇ 언론의 정보 요구사항 파악
		ㅇ 시의적절한 정보 제공 (관계부처 협의)
	위기진행	ㅇ 오보 및 유언비어 대응
	সাগত স	ㅇ 온라인 소통 협력체계 구축 및 SNS 활용 정보 공유
		ㅇ 공동취재단 구성 및 언론 현장 취재지원
		ㅇ 기관장, 전문가 등 브리핑 추진
		ㅇ 결과 브리핑
		ㅇ 위기 대응 평가 및 사례 자료집 발간
		- 위기관리소통센터 활동 분석 및 평가
		- 여론분석
위기 후 (post-crisis)		ㅇ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개선방안 마련
		ㅇ 회복 프로그램
		- 상황관련 개선방안
		- 내부조직원 결속프로그램
		- 대외공중 회복프로그램
		- 언론사 및 주요 공중, 관계자에 감사서신 발송

4. 대변인 지정 및 위기관리 소통센터 역할

- ㅇ 대변인 지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본부장(장관)이 지정하는 자(차관 또는 1급 이상 공무원)
- 중앙사고수습본부 : 본부장(장관)이 지정하는 자(부처대변인 등 고위공무원)
- 현장 : 각급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부기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
- * 각 대변인은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해 복수로 하고 1, 2, 3 순위를 정해 미리 정해둠.
- ㅇ 대변인 지위 · 역할
 - 대외적으로 유일한 공식 창구
 - 위기관련 모든 회의 참석, 상황을 장악하고 관련기관 간 메시지 조율
 - 브리핑 등을 통해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홍보 활동 시행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변인 : 현장 지원 및 범정부 대책 중심 브리핑
 - 현장 대변인 : 구조 등 수습활동에 대한 상황 중심 브리핑

0 위기관리소통센터 활동



※ 문체부 소통실 홍보지원 사항

- ㅇ홍보협의 위해 현장지휘소-소통수석실-국조실-문체부(소통실) 간 연락체계 유지
- ○홍보지원 사항 : △ 초기 메시지 관리, △ 여론 모니터링 및 대응 협조, △ 현장 의문사항 컨설팅, △필요시 취재지원 인력 파견 등

5.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기준

가.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되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브리핑하라

- ㅇ 위기시 초기 발표가 정부의 신뢰를 좌우한다.
- 첫 발표는 확인된 사실만을 발표 한다
- 확신이 없는 사안은 확인해서 알려주고, 추측성 답변이나 주관적 견해, 정보의 부분적 유출은 추후 불필요한 논란과 부정확한 보도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삼간다.
- 감염병 등 진행 중인 위기의 경우 사태 추이 등을 예단하는 발언은 자제한다
-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숫자 인용 등 데이터 오류는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과 언론의 신뢰를 잃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 한다.
- 정확한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현재 파악된 바 로는', '잠정', '몇시 경', '회사 측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 ㅇ 초기 사고원인, 피해상황에 대한 언급은 신중을 기한다
- 주관적 판단이 결부된 추측성 답변, 예단하는 발언은 혼란을 부추기고 비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답변을 해야 할 경우, '구체적인 사고 원인, 피해상황은 현재 조사 중',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등의 표현을 사용 한다.
- ㅇ 문서로 작성한 발표 자료만 브리핑한다.
- 초기에 대변인이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정리된 자료만을 기초로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창구를 단일화하고 한목소리를 유지하라

- o 여러 채널을 통해 상호 모순되는 정보가 제공되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유념한다.
- 정보는 반드시 공식 대변인을 통해 전달하고 필요시 대변인 승 인 하에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 한다
- ※. 대변인은 모든 회의에 참석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파악, 상황을 장악
- 정부 내에서 통일된 입장을 정리하여 유지한다.

- ㅇ 다른 조직에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삼간다.
- 다른 조직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 조율을 거쳐 발표하도록 한다.
-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열거나 핫라인을 통해 입장을 사전 조율해야 한다.

다. 언론은 최대한 준비한 뒤 대하라

- o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언론 및 온라인(소셜 미디어 여론) 모니터를 통해 여론·사회적 분위기를 파악해야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 전체 홍보 상황을 고려해 핵심 메시지, 정부 입장 등을 발표문으로 준비하고 언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미리 정리해 둔다.
- 온라인 및 소셜미디어 상에서 생겨나는 각종 루머, 비판, 유사 및 거짓 정보 등을 적시에 발견 정리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정확하게 초기 해명함으로써 소멸시키는 활동들을 지속해야 한다 (지속적인 공식 해명 자료 배포 등)
- 브리핑 등 대언론 설명 직전까지 현장 상황 등에 대한 최신 정보및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라. 피해자 등 국민 정서를 항상 염두에 두고 발언, 행동하라

- ㅇ 위기 시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발언이나 행동은 국민적 공분을 낳는다.
-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한다.
- 정부 인사의 태도나 행동이 여론의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진지하고 신중한 자세를 유지한다.
- 정부의 입장이 아닌 국민·언론 등 제 3자적 입장에서 메시지를 생각하고 냉정하게 평가한다.
-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 것인지 신중히 결 정해야한다.

- ㅇ 사람 중심 시각에서 언론에 브리핑하고 설명한다.
- 인적 피해는 물적 피해에 앞서 언급하고,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하며 진솔한 애도와 위로를 표명한다.

마. 언론 및 온라인(소셜 미디어)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라

- o 기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면 제 3자의 정보에 의존하게 돼 오보 가능성이 높아진다.
 - 기자들의 요구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알맞은 정보를 제공해 언론의 정보 수요를 충족시켜야한다.
- 상황이 허락하고 논란이 없는 사안에 관해서는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안전·보안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취재가 어려운 경우에는 언론에 충분한 이해를 구한다.
- 사진·영상 자료 등을 다양하게 확보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시로 제공한다.
- 공식 브리핑 자료들은 민감한 부분만을 제외하고, 정부 공식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 전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 ㅇ 정부 발표 시 위기대응 조치가 진전되고 있음을 보이도록 한다
-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조치가 상황에 맞춰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바. 모든 정보를 공식화하라

- o '오프더레코드(Off The Record)' 는 지켜지기 어렵고, '노코멘트 (No Comment)' 는 문제가 있거나 숨기고 있다는 암시를 준다.
- 최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불가피하게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그 사유를 공개하여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 오보 및 유언비어에는 즉각 대응하라

- 오보가 한번 보도되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첫 오보에 대응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오보가 이어지며, 유언비어는 SNS, 댓글 등을 통해 교차 인용되며 급속히 확산되므로 정확한 정보공개 등을 통해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온오프라인 수시 모니터링으로 오보 및 유언비어를 신속하게 확인한다.
- 오보의 경우 담당 기자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정정이나 반론 보도를 요청한다.
- 보도 해명자료를 즉시 배포하고 온라인에 해명 글을 게재한다.
- 명백한 오보임에도 정정보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
- 위기 발생 시에는 언론의 오보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기 브리핑, 보도자료, 온라인, 공식 소셜 미디어 채널 등을 통해 정부의 해명 메시지들이 충분히 메시지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아. 위기관련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라

- ㅇ 위기 시 언론이 접촉하는 전문가 의견은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친다.
- 주요 전문가 및 관련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사건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한다.
- 주요 전문가 및 오피니언 리더 중심의 온라인 네트워크 연락망을 구축하여 실시간 정보를 교류하고 조언을 구한다.

자. 외신 기자 취재 지원 계획을 수립하라

외신 보도는 대외적 국가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내외신 보도는 상호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 외신 담당관을 지정해 적극적으로 외신에 대한 취재 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 브리핑이나 현장 방문 풀(Pool) 구성 시 외신 기자를 포함한다.

차. 국민들의 주의와 행동이 요구되는 경우, 대응 요령에 대한 메시지 를 쉽고 간단하게 제작해 활용하라.

6. 브리핑 및 취재 지원 기준

가. 브리핑 전 사전 리허설을 가져라

언론의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 언급을 삼가야 할 주제나 용어 등을 미리 파악해 둔다.

나. 브리핑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라

기자들의 위기 시 정보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정보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한다.

다. 쉽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라

- 전문용어나 업계에서 통용되는 약어 사용을 삼가고 정부 발표를 직접 인용해 기사화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브리핑한다.
- 용어로 설명이 어려운 경우 그림 사진 및 영상 등을 함께 제공한다.

라.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결론부터 말하라

o 편집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둔다. 답변 내용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답변을 한 번 더 되풀이 한다.

마. 질문에 얽매이지 마라

- 질문이 잘못된 사실이나 가정을 전제로 한 경우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 확언 요구 등 답변이 곤란한 경우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등으로 언급한다.

바. 인터뷰에서는 핵심 중심으로 간략히 말하라

- o 방송 인터뷰의 경우 편집되지 않도록 10초 내에 짧게 답변하고 준비되지 않은 돌발 인터뷰는 삼간다.
- 한 번 잘못 언급한 말은 지속적으로 방송된다는 점을 유념한다.

사. 위기대응 활동의 설명에 도움이 되는 인사와 자료를 활용하라

현장 지휘책임자, 기관장 등의 브리핑이나 기자회견 기회를 마련하고,
 관련 통계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아. 알려질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마라

부정적 사안이라 할지라도 알려질 사실이라면 숨기지 말고 선제 적으로 발표하고 전후 사정과 맥락을 충분하게 설명한다.

자. 정직이 최우선이다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진정성을 갖고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체에 솔직하고 겸손한 태도로 임한다.

차. 미디어 트레이닝을 평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o 평소에 위기 상황을 상정하여,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 및 질의응답 대응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카. 현장을 질서 있게 관리하라

- o 언론의 보도 경쟁이 과열될 경우 공익과 무관한 자극적·선정적 뉴스가 양산되고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
- 조치를사고 현장에 접근제한선(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필요시 적절한 안내 취한다.
- 필요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풀(Pool) 기자들이 공보담당자의 인솔 하에 현장을 방문, 취재하도록 안내한다.

타. 언론을 공평하게 대하라

 특정매체에만 정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취재기자 리스트에 근거 해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파. 복장은 정복이나 비상근무복을 착용하라

이 위기 상황이라는 점에서 대변인이 아닌 경우에도 브리핑, 기자회 견 참석자는 이 원칙을 준수한다.

〈붙임1〉 사고현장 취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고현장 취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장소)

- 0 사고현장에 가깝고 취재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 0 현장 대책본부 활동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분리된 곳
- 0 충분한 공간(취재진 규모 예상) 확보
- (시점) 현장 사고대책본부 설치와 동시

(기능)

- 0 수시 상황브리핑 실시 및 보도자료 배포
- 0 언론 상황파악 및 대응
- 0 취재 송고시설 및 행정서비스 지원
- 0 사고현장 안내 및 취재제한선 준수 협조

(취재지원팀의 배치)

- 0 언론지원 담당
 - 기자등록부 관리 등 언론연락체계 유지
 - 보도자료 등 배포(이메일, 문자, SNS 등)
 - 언론 요구사항 파악(공동 현장취재 수요 파악 및 현장 안내 등)
- 0 센터 설치·운영 담당
 - 브리핑실·기자실 등 취재공간 확보 및 기사송고시설 설치
- ※ 현장에서 송고시설 등 설치가 어려울 경우 가장 가까운 장소 및 시설 확보
- 현장에 취재제한선(폴리스라인/포토라인) 설치 요청
- 공동 현장취재 등 이동용 차량 준비, 취재진 편의 제공
- ※. 구비물품 리스트: 마이크, 백드롭, 책걸상, 화이트보드, 발표대, 전화, TV, 컴퓨터, **인터넷** 등 송고시설, 취재기자 등록부, 프린터, 팩스, 필기구, 지도, 음료수 등

<붙임2>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작성 탬플릿

메시지 작성 시 필수 고려 사항

타깃 (공중, 오디언스)	메시지의 목적	전달 방법(매체)
위기(사건)에 대한 관여 정도인구통계적 특성피해규모(정도)	- 진행상황/사실 전달 - 집회/연설 등 - 현재 상황 설명 - 루머대응 - 미디어 응대	- 신문 보도자료 - 홈페이지 게재 - 대변인발표(TV, 현장발표) - 라디오 - 소셜미디어 - 기타(전화 응대 등)

메시지 기본 요소 (사과문, first response)

피해자에 대한 배려
사건개요 (6하 원칙)
- 누가
- 언제
- 어디서
- 무엇을
- 어떻게
- 왜
사건의 원인 규명 노력 천명(구체적)

원상회복 노력 천명

⟨붙임3⟩ 위기 원인과 유형별 유의 사항

상황	사실(fact)	인식(perception)
정부의 책임이 높은 경우	 현 시대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위기 발생 시 위기 상황을 회피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등동적 대처가 필요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예: 공중의 불확실성 감소, 타당성 검증 요구에 적극 대응 및 정보 공개) 위기 前, 위기 中 그리고 위기 後 등 각 단계 별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대응 커뮤니케이션 내부 공중, 소속 부서들 간의 효과적인 소통을 통한 위기 해법 및 대안 모색 조직 전체가 협력하여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이 특히 위기 발생 원인이 정부에 있어 정부의 책임이 높은 경우,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피해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대응 필요 신속한 사건 경위 전달 사과 및 책임감 표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전달 관계 개선 노력 이미지 개선 노력 	 ○ 위기 발생의 원인이 정부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책임이 높다고 인식되는 경우, 보다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위기 대응 필요 - 위기를 회피하기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위기 돌파 혹은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 필요 - 적극적인 정보 공유도 중요. 위기원인 공개, 상황 공유 등 잘못 알려진 정보를 정확하게 정정 - 신속한 위기관리팀 구성운영 - 종합하면, 적극적인 정보제공 및 공유를 통한 언론의 오보와 유언비어 및 루머를 최소화 하고 호의적인 언론보도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며, 공중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획득하도록 소통 ○ 분야별 전문가 그룹 등과 같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력 방안 모색 필요 ○ 정부 신뢰 회복을 위한 상시 커뮤니케이션 활동 모색 - 참여형 소통 방안 -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 적극 활용
타 주체와 정부의 공동책임 인 경우	 아 타 주체와의 공동책임인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소통의 전략들 필요. 다만, 그 이외에 추가로 유의해야 할 부분은 타 주체와의 통일된 커뮤니케이션 필요 단일화 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한 메시지 통일 위기 단계별 상황에 부응하는 소통 위기 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황분석 필요 	 발생한 위기가 타 주체와의 공동 책임으로 인식되는 경우, 초기 위기 상황, '정보의 공백기'에서 적극적인 정보공유 필요 불필요한 소문 확산을 막고, 초기 이슈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 위기 확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 필요 평상 시 신뢰감을 확고히 하는 평판관리 필요

2. 국가위기관리 영상회의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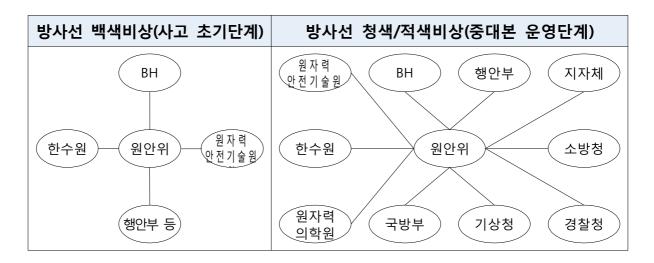
□개요

- (목적) 청와대,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부처, 한국수력원자력, 한 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긴급구조기관(소방·해경), 지방자치단체 등 과 상황 공유, 범정부적 신속 대응
- (연결기관)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279개 기관과 연결

구분	연결기관(279개 기관)	
중앙 (26)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18부 ・5청(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지자체 (245)	•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 [*] * 시·군·구는 시·도를 통해 연계	
재난관 리책임 기관 (8)	ol · 안국실도농사, 안국우덕원사덕, 안국도동사, 안국신덕 -	

□ 영상회의 운영

- (대상회의) 상황판단/대책회의,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회의 등
- (참여기관) 국가위기관리센터, 원안위(주관기관), 행정안전부, 한 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수력원자력, 지방 자치단체 등



- ※ 재난의 규모 및 대응단계 등에 따라 영상회의 참여기관은 변동 가능
- (참 석 자) 회의 참석대상 및 위기상황 등에 따라 판단
 - ※ 예: 대통령 회의 주재 시 각 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 참석 등
- (회의내용) 재난의 규모에 따른 조치방향 및 재난관리 단계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총괄·조정
 - (대비태세) 중앙·지역·현장(지역) 지휘·보고체계 구축, 상황파악 및 대응계획 점검, 재난 상황대응체계 강화 및 긴급전파체계유지
 - (협력·지원체계) 관계기관 재난상황 전파·공유 등 협력체제 가 동, 사고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및 민간 구조 현황점검 및 동원체 제 구축
 - (대응조치) 재난수습에 필요한 구조·지원 세력 지휘 등 사고대 응 총괄지휘 체제 구축

3. 방사선비상시 국민 행동요령

□ 정의

○ 방사선비상 :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이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상황(비상명칭은 방사능방 재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종류	내 용			
백색 비상	○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의 건물 내에 국 한 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 사태(주민보호조치 필요 없음)			
청색 비상	○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의 부지 내에 국한 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 사태(주민보호조치 시행 준비)			
적색 비상	○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의 부지 밖까지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 사태(주민보호조치 시행)			

- 방사능재난 : 방사선비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에 피해 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확대되어 국가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 한 재난
- 원자력시설 : 발전용 원자로,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핵물질 사용시설 등 원 자력 이용과 관련된 시설

□ 방사선비상 상황을 알리는 방법

- 방사선 청색 또는 적색비상 발령 시, 경보방송망, 텔레비전, 라디오, 차량가두방송, 행정안전부 재난문자 등을 통해 방사선비상 상황 알림
 - * 백색비상 때에는 방사성물질의 환경 누출 가능성이 없으므로 경보망 등을 통한 주민 상황통보는 없으며, 언론 등을 통해 대 국민 공개

□ 방사선비상 상황시 행동요령

구분	행동요령			
기업 공공기관 학교	· · · · · · · · · · · · · · · · · · ·			
가정	 〈실내 대피 통보를 받은 경우〉 외출중일 때는 즉시 귀가하거나 가까운 공공기관으로 이동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에어컨과 환풍기 정지 장독이나 우물 등은 뚜껑을 닫음. 음식물은 랩을 씌우거나 밀봉 손발과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음 * 오염지역을 지나온 경우 입었던 옷과 신발은 비닐에 싸서 밀봉 전화 또는 인터넷이 불통되어도 당황하지 말고 안전한 실내에서 TV·라디오를 시청하여 비상시 행동 요령을 확인하고 전달되는 지시에 따름 〈안전지역(구호소) 대피(소개) 통보를 받은 경우〉 외출중일 때는 즉시 귀가하거나 가까운 공공기관으로 이동 준비물: 갈아입을 옷 약간, 휴대폰(충전기), 평소 먹는 약 등 필수품 화재예방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수도를 잠금 장독이나 우물 등은 뚜껑을 닫고 음식물은 랩을 씌우거나 밀봉 가축이나 애완동물은 우리에 가둔 후 충분한 먹이를 줌 모든 출입문과 창문을 잠그고 대피완료 표시(출입문에 흰수건) 마을별로 지정된 집결지로 걸어서 이동(지자체 비상요원, 마을 이장 등의 안내에 따름) 지자체 비상요원의 안내에 따라 제공차량 등으로 구호소로 이동 구호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이재민 등록 			

□ 유의사항

- 방사선비상은 방사선 영향이 국민들에게 미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발령됩니다. 서두르지 않고 질서 있게 당국의 지시에 따라행동하여도 시간은 충분합니다.
- 같은 방사선비상 상황이라도 원자력시설과의 거리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시설은 청색비상이 발령 되면 지자체의 별도 계획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 구호소에서는 이재민 등록을 통해 가족과 연락하고 만날 수 있으므로 학교, 병원, 직장에 있는 가족을 찾으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 비상시에는 통화량이 폭증하여 휴대전화 등이 불통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실내나 구호소에서 TV와 라디오를 시청하세요.
- 구호소에서는 음식물과 잠자리, 기본적인 생필품이 제공됩니다.
- 갑상선보호약품(KI)의 분배와 복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지시합니다.(임의복용 금지)

□ 주민보호조치 시행방법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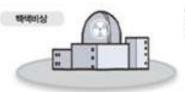
-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 청색비상(또는 적색비상)이 발생하는 경 우 다음과 같이 국민들께 알려드립니다.
 - 원자력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설치한 사업자경보망을 통해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원전 중심 반경 3~5km)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통보하고,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고 있는 기초지자체는 민방위 경보 망, 가두방송, 직접방문, 이·통장을 통한 전달 등의 방법으로 주 민에게 통보하며,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하여 TV·라디오 등으로 알려드리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휴대폰을 통해 긴급재 난문자를 전송합니다.
- 일반주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주민보호조치가 수 행됩니다.
 - 방사능영향이 부지 밖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방사선비상

상황인 적색비상이 발령되면, 방사성물질 방출 이전에 예방적 보호조치구역(3~5km) 내의 주민들을 예방적 차원에서 즉시 구호소로 소개하게 되며,

-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원전 중심 반경 20~30km)은 풍향, 풍속, 강수량 및 지형 등을 고려하여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예측한 결 과를 반영하여 주민소개, 옥내대피 등 적절한 주민보호조치를 결정하게 되고,
- 방사성물질이 시설 외부로 방출된 이후에는 환경감시결과를 반영하여 방사능영향이 미치기 전에 주민보호조치를 수행하게 됩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주민소개를 지시하게 되면, 소개 대상 주민은 마을 주변 집결지에 집결한 후 지방자치단체 방사능방재요원의 안내에 따라 미리 준비된 구호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 집결지는 통상 마을회관, 기차역, 초등학교, 면사무소 등 마을 주민 누구나 알고 있고, 버스 등 교통수단이 정차할 수 있는 곳으로 관할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 구호소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주민들이 방사능 영향(방사능 구름)을 피해 2~7일 정도 생활하기에 필요한 전기, 수도, 취사 시설, 화장실 등을 갖추었거나 즉시 갖출 수 있는 실내인 각 급 학교, 체육관, 강당 등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구호소의 선정, 물품 보급, 급식 방법 등 구호소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해 지역적 특성과 지자체의 사정 등에 따라 최선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가 판단하여 운 영하고 있습니다.

백색·청색·적색비상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와 피해의 심각성에 따라 백색, 청색, 적색비상으로 구분합니다.



방사선 엉덩이 원지보건을 내무네 국한팀 것으로 예상



빡색비상 시 행동요령 및 대용

행동요령

研修品を

대의준비

정부대용

지자세 대원

• 팽성시와 값이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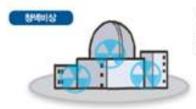
· 메비전당지하셨다 · 언론 등을 통해 발족 운영

대국민공개

지지에 대용

지지에 대중

本門財産支利



방사선 영향이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부에 국한될 것으로 5580

청색비상 시 행동요형 및 대용

WAY 18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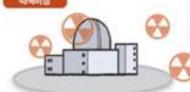
·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各分型从分型用

대책본부 발족 운영

준비

· 한창영사동영제 지취센터 발족 운영

자바비상



병사선 명령이 원자메일전소 부지 MINE GOD 미칠 것으로 예상

적석이상 시 행동요령 및 대원

행동요형 지지체 발재요원의

OUTSTAND.

204 (8B) 주민보호조치 결정
 주민보호조치

사고 수습 통제

지시에 따라 질서있게 • 원전 비상대용 및

실행

방사선비상 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백석비상일 경우 지자체에서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하고, 청색·정색 비상일 경우 이래와 같이 알래드립니다.

の影響を基準を対す。(3~5m)

| 사업자 | 사업자 경보인을 통해 상황 방송

1 지지배 F 만방위 강남양, 기무방송, 직업병원, 마음장을 통한 강당, 전화

1 정 부 1 간급제단Ma(TV, 과디오 전) 및 간급제단였지 전송



건글보호조치 개최구역 GD~30km)

[지자배] 인생위 경보인, 기투방송, 시입병분, 아롱성을 통한 전달, 전화 1정 부 1건(급제는 MYS(TV, 라디오.B) 및 건급제는 IRA 전송

방사선비상 발생 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원전사고 시 방사성품질 확산 경로는 바람의 방향 등 기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을 위해서는 공식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대피 준비 ①

방사능 오염을 막으려면, 외부 공기가 집으로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대피 준비 ②

화재나 감전 등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대피 준비 ③

음식물과 잠자리, 식수 등 기본적인 생필품은 구호소에서 제공하므로, 평소 먹는 약품, 갈아입을 옷 약간, 휴대전화 등 개인에게 꼭 필요한 물품들만 챙깁니다.



대피 준비 @

가축이나 반려동물이 지낼 수 있도록 물과 먹이를 갖추어 주세요.



대피 안내를 받으면

마을 주변 집결지로 이동한 후,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차량을 이용, 질서 있게 구호소로 이동합니다.

지지배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칠서 있게 구호소로 이용합니다.



* 1차 집결자는 지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의 안부는 구호소에서

학교, 공공기관, 병원 등에서는 각 기관 또는 지자체 차량으로 구호소로 이동합니다. 직접 찾으러 가지 않아도 구호소에서 가족을 만나거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리 원전 지역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월성 원전 지역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한빛 원전 지역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한울 원전 지역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소관 부서

기 상 청

연락처	예보정책과	전화	02-2181-0493,0502
		FAX	02-847-4419

※ 본 매뉴얼에 대하여 수정, 또는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상기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